



United Kingdom

# 해외세정연구 경진대회 연구보고서

영국편 (2nd edition)

2016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United Kingdom

# 해외세정연구 경진대회 연구보고서

영국편(2nd edition)

2016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본 안내서는 영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영국세법 등을 2016년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참고자료일 뿐,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적용 시에는 반드시 영국세법 및 조세조약의 관련조문 등을 확인하시고,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세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내서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할 점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다음 기회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머리말

국세청은 현지 국가의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해외진출기업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해외세정 연구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팀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는 최근 동향 및 세법 개정내용 등을 반영한 필리핀,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영국에 대한 연구보고서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수록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지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좀 더 유익한 연구보고서 발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연구보고서가 해외 진출한 우리기업의 현지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6. 12월

국제조세관리관





I. 총 론	1
1. 국가개황	2
2. 조세체계	5
3. 최근 세제개혁	8
II. 조세제도	11
1. 소득세법	12
2. 법인세법	21
3. 부가세법	31
4. 국제조세	40
5. 기타조세	78
III. 국세행정 및 절차	83
1. 세금신고 및 납부	84
2. 세무조사	84
3. 조세불복	86
4. 세무대리인	90
IV. 기 타	93
1. 참고자료	94
2. 부 록	95






# I. 총론

1. 국가개황 / 2
2. 조세체계 / 5
3. 최근 세계개혁 / 8



# 1 국가개황

## □ 일반사항

영 국 지 도	일 반 사 항	
	정식국명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수 도	런던 (약 817만명)
	면 적	약 24.482만km <sup>2</sup> (한반도의 1.1배)
	인 구	2014년 기준 총 6,374만명
	영 토	England, Wales, Scotland, Northern Ireland로 구성
	언 어	영어 (웨일스 인구의 19%는 웨일스어 사용 가능)
	정치체제	입헌군주제
	종교구성	(기 독 교) 59.5%, (이슬람교) 4.4% (힌 두 교) 1.3%

경 제 지 표	
GDP	(2013년) 2조 5,400억 달러
1인당 GDP	(2013년) 41,589 달러
화폐단위	영국 파운드 (GBP)
교역규모	· 총 수출 : 4,722억 달러 (2013년) · 총 수입 : 6,340억 달러 (2013년)
교역 품	· 수출품 : 금, 승용차, 원유 및 광물, 의약품, 제트터빈 · 수입품 : 금, 승용차, 원유, 정제석유, 의약품, 항공기
산업구조	· 1차 산업 : 1% · 2차 산업 : 25.4% · 3차 산업 : 73.6%



## □ 교역내역

### ○ 주요 교역품

- 수출 (한국 → 영국) : 선박, 승용차, 무선전화기, 반도체, 건설중장비
- 수입 (영국 → 한국) : 의약품, 주류, 펌프, 승용차, 백금

### ○ 최근 10년 간 교역추이

- 2008년 96억달러에서 67억달러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 89억달러로 회복세를 이루었으며, 이후 2015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2013년 기준 영국은 한국의 16대 수출 대상국(76억 달러)이며, 24대 수입 대상국(47억 달러)임.

### ○ 2014~2015년 對 영국 수출입 실적

단위 : 천 불 (USD 1,000)

기 간	수출건수	수출금액	수입건수	수입금액	무역수지
총계	207,030	16,389,577	583,629	15,708,919	680,658
2014	84,901	5,782,610	236,412	7,446,596	-1,663,986
2015	85,846	7,390,096	255,048	6,127,123	1,262,973

### ○ 영국 내 재외동포 현황 (2012년 기준)

시민권자	영주권자	체류자(추산)		계
		일반체류자	유 학 생	
7,388명	10,728명	13,169명	13,464명	44,749명

### ○ 양국 간 조세 관련 주요 협정

- 1996. 10. 25. : 양국 간 조세협정 체결
- 2012. 7. 1. :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우리나라 2012. 7. 1.부터 발효)

□ 진출 기업 현황

업 체 명	업 종	진출연도	사 업 내 용
CJ 제일제당	제조업	2012	- 진출형태 : 판매법인 - 취급분야 : 식료품 - 종업원 수 : 5
GS건설 런던지사	건설업	2011	- 진출형태 : 지사 - 취급분야 : 건설 - 종업원 수 : 2
국민연금공단	비영리	2013	- 진출형태 : 지사 - 취급분야 : 투자 - 종업원 수 : 3
한국보건 산업진흥원	비영리	2013	- 진출형태 : 지사 - 취급분야 : 의료 산업 전반 - 종업원 수 : 3
한국전력 영국지사	전 기	2012	- 진출형태 : 지사 - 취급분야 : 전기생산 - 종업원 수 : 3
지 투 알	광고업	2010	- 진출형태 : 법인 - 취급분야 : 광고 - 종업원 수 : 11
현대로지엠 영국법인	운송 · 물류	2007	- 진출형태 : 지점 - 취급분야 : 택배 - 종업원 수 : 8
에이치 마트	도소매 · 유통	2009	- 진출형태 : 판매법인 - 취급분야 : 식품 유통 - 종업원 수 : 50

## 2 조세체계

### □ 영국의 조세 체계

- 영국은 영국본토(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로 이루어진 연합국으로 세 개의 분리된 법체계에 따라 집행함.
  - 세 개의 분리된 법체계는 동일 법률 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법체계 문제로 국세청의 결정이 반복되는 경우는 없음.
- 영국의 세법 체계
  - 우리나라 법률체계와는 상이한 영미법 계통으로,
  - 판례가 세법을 보충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 Finance Bill을 통해 개정세법에 대한 초안을 공표하며, 이후 확정된 세법은 Finance Act를 통해 시행됨.
  - Finance Bill은 Finance Act를 통해 시행되기 전부터 효력을 가질 수 있음
- 영구세(Permanent Tax)와 연간세(Annual Tax)
  - (영구세) 세율이 매년 일정한 것을 원칙으로 함.
    - ⇒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이 영구세에 포함
  - (연간세)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 법으로 제정되며, 경제여건이나 조세정책에 따라 세율과 그 구간, 감면한도 등이 매년 변함.
    - ⇒ 소득세와 법인세 등이 연간세에 포함.
- (행정적)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
  - (국 세) 내국세, 관세 기타과세로 구분되며 영국 국세청이 담당함.
  - (지방세) 자산과세의 성격을 지니며 단일세목(카운슬세, Council Tax)으로 구성

## □ 영국의 주요 세법

직접세 (Direct Taxes)	간접세 (Indirect Tax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소득세(Capital Gains Tax)</li> <li>· 법인세(Corporation Tax)</li> <li>· 소득세(Income Tax)</li> <li>· 상속세(Inheritance Tax)</li> <li>· 국가보장적립금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li> <li>· 소비세(Excise Duties)</li> <li>· 보험세(Insurance Premium Tax)</li> <li>· 석유세(Petroleum Revenue Tax)</li> <li>· 인지세(Stamp Duty)</li> <li>· 토지인지세(Stamp Duty Land Tax)</li> <li>· 채권, 주식 인지세 (Stamp Duty Reserve Tax)</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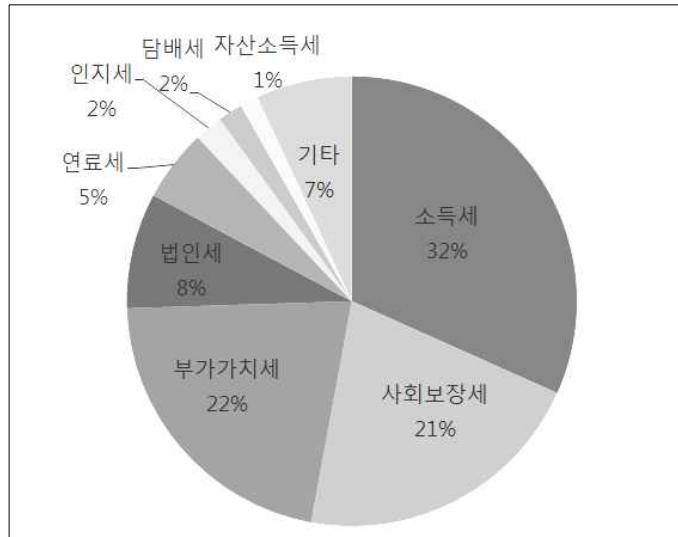
## □ 영국의 세법 재정비

- 영국의 복잡한 조세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1997년부터 세법다시쓰기(Tax Law Rewrite)를 통해 주요 세법을 재정비
  - 세법다시쓰기는 법률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나 작은 오류의 수정이나 기존 법률에서 불필요한 내용의 삭제 등을 포함하여 법조문을 다시 쓰는 것을 목표
  - 법률에 대한 법령뿐만 아니라 관련 행정규칙, 판례법까지 재정비하였으며, 2010년에 이르러서 완성
- 영국의 세법다시쓰기 연혁

연 도	대상 법률(Act)
2001	자본공제법 (Capital Allowances Act)
2003	소득세법 (Income Tax Act (Earning and Pension))
2004	원천징수 (Pay As You Earn)
2005	소득세법 (Income Tax Act (Trading and Other Income))
2009/2010	법인세법 (Corporation Tax 2010)
2010	국제조세 (International and (other Provisions) Act)

## □ 영국의 조세 수입

### ○ 조세수입 비중



- 2015/16 총 세입은 £6,822억으로 지난 해(£6,728억)보다 £94억 증가 하였으며, 그중 조세수입은 £6,309억으로 총 세입의 92.5% 차지함.
- 영국의 조세 수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득세로, 약 30%의 비중을 차지함



### 3 최근 세제개혁

#### □ 법인세 인하

- 법인세는 2010년 28%에서 현재 20%까지 인하되어 왔으며, 추가적으로 2017년 19%, 2020년부터 18%로 인하할 계획
- 소규모 사업자의 면세 상한선도 기존 £6000에서 £15000로 높이겠다고 밝혀 약 63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될 전망

#### □ 소득세 소득범위 상향 및 공제한도 조정

- 소득세 최고세율인 40%가 적용되는 소득범위를 £43,000에서 £45,000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고소득층 일부에 감세 효과를 적용
- 2016~2017의 소득 공제한도를 £10,600에서 £11,000로 인상
- 2020년 까지 소득 공제한도를 £12,500으로 인상하고 이후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주당 30시간 근무까지 소득세 면제를 추진

#### □ 설탕세(Sugar Tax) 도입 발표

- 아동 비만, 당뇨 등을 줄이기 위해 2018년까지 청량음료에 설탕세(Sugar Tax)를 부과하는 계획안 발표
- 청량음료를 설탕 함유량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하여 세금부과 예정
  - 100ml당 설탕 5g 이상 함유된 음료는 1리터당 £0.18의 세금 부과
  - 100ml당 설탕 8g 이상 함유된 음료는 1리터당 £0.24의 세금 부과



- 생과일과 우유등 유제품은 제외될 예정
  - 세금으로 약 £52000만 거둘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방과 후 학교 운영을 늘리는데 지원될 예정
- 영구 비거주자의 면세자격 폐지**
- 현재 영국에 거주하면서도 영구 주소지가 영국이 아닌 경우 역외 수입에 대해 면세 하였으나 2017년 4월부터 지난 20년간 15년을 영국에서 체류한 경우 영국 거주자(UK-domiciled)로 간주 세금 부과
- 임대인 세금경감 혜택 축소**
- 세금공제율을 현재 40~45%에서 2020. 4월까지 20% 수준으로 축소 예정
- 조세 시스템 개선·강화**
- 영국 국세청의 조세회피와 규정불이행(non-compliance) 납세자 타파를 위해 투자확대와 범죄 조사 인력 3배 확대하여 국세청 역량 강화 추진
  - 국세청의 기업정보 접근을 개선하고 조세회피자 처벌 강화 및 이름공개 제도 도입 예정
- 지속 가능한 복지 제도로 개혁**
- 근로계층혜택(조세혜택, 주택수당 포함)을 2016/17부터 4년간 동결하고, 연간 가구당 수당 상한선을 현 £26,000에서 £20,000로 인하
  - 자녀양육수당(child tax credit) 대상을 2017.4월 이후 출생 아동부터 2명의 자녀로 제한
  - 주택조합의 임대료를 향후 4년간 매년 1% 인하하되 고소득자에 대하여 (런던 £40,000, 런던 외 £30,000 이상) 시장 임대료 지불



## Ⅱ. 조세제도

1. 소득세법 / 12
2. 법인세법 / 21
3. 부가세법 / 31
4. 국제조세 / 40
5. 기타조세 / 78



# 1 소득세법

## □ 소득세 개요

- 1782년 12월 윌리엄 피트 (william pitt)수상에 의해서 나폴레옹 전쟁의 전지 조달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후 영구적으로 정착된 세목
- 영국의 우리나라보다 과세범위가 광범위하여 현금소득 뿐만 아니라 현물 소득(benefit in kind)를 포함
- (개인 회계연도) 4월 6일부터 다음해 4월 5일까지임

## □ 소득세법의 개편

- 영국의 세법다시 쓰기를 통해 구분과세시스템(Scheduler System)의 폐지
  - Schedule E로 분류되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2003년 Income Tax Act (Earning and Pension)으로 대체
  - 그 외 기타 Schedule에서 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은 2005년 Income Tax Act (Trading and Other Income) 으로 대체

## □ 납세의무자

- 영국 거주자 (Resident)
  - 영국 거주자는 국내소득 및 국외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님
- 영국 비거주자 (Non-Resident)
  - 영국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며, 국외소득에 대하여는 영국에서 세금을 납부 할 의무 없음



- 영국은 2013년 4월 6일 이전에는 과세목적상 거주자는 법원 및 국세청 지침에 의해 결정하였으나, 2013년 04월 06일 부터 객관적인 거주자 결정을 위해 새로운 거주자 법정심사(Statutory Residence Tes)라는 명문화된 판정기준 도입

**거주자 법정심사(Statutory Residence Test ; SRT)**

- 거주자 법정심사는 국외거주 심사, 영국거주심사, 영국관계심사가 있음
  - 국외거주심사 (Automatic Overseas Tests) : 국외 거주 심사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지며, 세 단계중 하나를 통과하면 자동적으로 비거주자가 됨
    - ① 1차 국외거주심사 : 당해 과세연도 이전 3개 과세연도 중 한 과세연도 이상 영국거주자로 판정된 경우가 있고, 당해과세연도에 영국에 16일 미만 체류한 경우
    - ② 2차 국외거주 심사 : 당해 과세연도 이전 3개 과세연도 중 한 과세연도 이상 영국거주자로 판정된 경우가 없고, 당해과세연도에 영국에 46일 미만 체류한 경우
    - ③ 3차 국외거주 심사 : 업무상 단절 없이 해외에서 과세연도 동안 전일 근무제로 근무하는 경우로, 과세연도 동안 영국에서 91 미만 체류하고 3기간 이상 근무한 일수가 31일 미만인 경우
  - 영국거주심사(Automatic UK Tests) : 영국 거주 심사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지며, 세 단계중 하나를 통과하면 자동적으로 거주자가 됨
    - ① 1차 영국거주심사 : 납세의무자가 과세연도 중 영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 전체에 대해 영국 거주자로 간주
    - ② 2차 영국거주심사 : 영국의 주거를 가지고 있거나 해외에는 주거가 없거나 있더라도 허용체류시간만을 보내는 경우 연속적으로 91일 이상 영국에 체류하되 적어도 30일은 과세연도에 체류
    - ③ 3차 영국거주심사 : 영국에서 근로하는 전일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365일 기간 중 3시간 이상 일하는 날의 총 근무일수의 75%가 영국에서 근무한 날이면 영국거주자로 간주
  - 영국관계심사 (Sufficient Ties Test) : 위에 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개인이 받는 심사로 4가지 보조지표(가족관계, 거소, 근로관계, 90일 기준)을 기준으로 영국과의 사회·경제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거주자임을 판단

□ 과세소득 대상

- 근로소득, 일반 사업소득, 임대사업소득, 이자, 배당소득, 연금소득으로 분류
- 소득 분류 후 공제소득 및 비과세 등을 차감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후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세액을 산출

□ 근로소득 (Earning Income)

- 대부분의 영국의 납세자는 영국의 원천징수(PAYE, Pay As You Earn)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의 원천에서 고용주가 원천징수하고 이후 정산을 통해 추가 과세나 환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PAYE (Pay As You Earn)>

- PAYE는 우리나라의 원천공제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근로 소득자에게 월급을 줄 때 소득세와 국민보험 기여금을 공제하는 방법
- 세금코드(Tax Code)을 이용하여 근로자 별 공제금액을 결정

세금코드 (Tax Code)

- 세금코드는 근로를 시작하게 되면 자신의 세금 공제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부여 받음.
- 세금코드 문자와 숫자로 구성

코드	의 미
L	개인공제로 인한 비과세 자격이 되는 근로자
M	기혼자 공제로 인하여 공제한도를 이전받은 자
N	기혼자 공제로 인하여 공제한도를 이전한 자
S	주거지가 스코틀랜드인 근로자
BR	세금구간이 Basic rate인 이중근로자 또는 연금수령자
D0	세금구간이 Higher rate인 이중근로자 또는 연금수령자
D1	세금구간이 Additional rate인 이중근로자 또는 연금수령자

- 영국 국세청은 새로운 과세기간 시작 전 1~3월에 세금코드를 갱신



## □ 일반 사업소득 (Trade Profits)

- 영국 내에서 이루어진 상업이나 전문직 직업 등으로 인하여 소득 발생 시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가짐
- 판례법에서 사업에 대하여 6가지 식별기준을 제시하나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 못함. (법령에는 정의되어 있지 않음)

### <사업의 식별기준 6가지>

- ① 거래의 실체
  - ② 유사한 거래의 횟수
  - ③ 현금화해야 경우
  - ④ 재산을 현금화하는 것과 관련된 보충적 기준
  - ⑤ 거래의 동기
  - ⑥ 거래물건의 소유기간
- 소득세 신고를 위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Self-Employment Register) 필요
    - 2016년 기준 10월 5일까지 사업자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가산세가 부과 될 수도 있음
  - 수입과 지출을 인식하는 시점을 정하는 기준은 3가지이며, 일단 하나의 기준을 선택하면 국세청의 승인이 있어야 변경가능

### <수익과 지출을 인식하는 시점>

- ① 권리 발생 시기
  - ② 현금흐름 기준
  - ③ 계산서 발급 및 수취 시기
- 과세 수익은 과세기간동안의 매출 수익과 공제가능한 지출사이의 차액
    - 수익에는 매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기타수익까지 포함
    - 공제할 수 있는 지출은 직접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함



## □ 임대사업소득 (Property Income)

- 소득자가 토지 및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는 수익에 대하여 과세
-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임대료 및 이와 유사한 급부를 임대소득에 가산하며, 당해 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된 사업 비용을 공제함
- 부동산 임대 소득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및 비용의 귀속 시기는 기본적으로 발생기준으로 산출하며, 일부의 경우 현금기준 사용 가능
- 특정 주거용 주택의 소액 임대활동에는 특례 과세 혜택(Rent-a Room)을 적용하고 있으나 그 외의 소규모 임대사업자를 위한 일반적인 과세 특례는 부여하지 않음

### Rent-a Room

- 소득자가 자신의 유일한 주택 또는 주거용 주택(furnished residential accommodation)을 임대하고 받는 소득으로서 연간 £7,500 이하 금액은 과세하지 아니함.
- 해당 주택의 임대료가 £7,5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임대소득 과세 방식 대신 당해 초과분에 한에서만 납세하는 방식 (Rent-a room relief)을 선택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별도의 임대비용 공제가 불가능함.

## □ 이자·배당 소득

- 이자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
  - 은행 또는 예금계좌로 부터의 이자
  - 신용조합·건축조합으로 부터의 이자
  - 회사채국채
  - 영국의 계좌에 입금된 다른 통화에서(ex.달러,유로 등) 발생하는 이자
- 배당소득에는 주식이나 펀드를 통한 배당 수익 등을 포함



□ 소득 공제의 종류

○ 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 시각장애인에 대한 공제, 기혼자 공제, 노령자 부부 공제가 있음

○ 기본공제(Personal Allowances)

- 근로소득이 있다면 주어진 범위에 소득에서 기본적인 공제 가능
- 영국은 소득 및 나이에 따른 기본공제를 적용함
- 2016/17 1948. 4. 5. 이후 출생자에 대한 기본공제

소득범위	소득공제
£100,000 이하	£11,000
£100,000 초과	£100,000에서 소득이 £2 상승하면 소득공제액이 £1이 감소

- 2016/17 1948. 4. 6 이전 출생자에 대한 기본공제

소득범위	소득공제
£27,700 이하	£11,000
£27,700 초과	£27,700에서 소득이 £2 상승하면 소득공제액이 £1이 감소

○ 시각장애인에 대한 공제(Blind Person's Allowance)

- 시각장애인으로 판정받아 지방정부에 등록되어 있거나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에 사는 개인이 시력으로 인해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 시각장애인가공제 가능
- 2016/17의 공제액은 £2,290로 나이나 임금의 제한 없음

○ 기혼자 공제(Marriage Allowance)

- 1935. 4. 5. 이후 태어난, 결혼한 부부(시민결합)만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 부부 중 한명이 소득이 없거나 £11,000이하의 소득을 가지며 다른 한명은 세율 20%구간의 소득을 받을 경우 기혼자공제가 가능하며, 기준이하의 소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고소득자에 추가하여 받는 방식
- £1,100까지 고소득자 소득에서 공제 가능(£220의 세금절약 효과)

- 노령자 부부 공제(Married Couples' Allowance)
  - 부부(시민결합) 중 한명이 1935. 4. 6. 이전에 태어났을 때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 2016/17 노령자 부부에 대한 공제

소득범위	소득공제
£27,700이하	£8,355
£27,700 ~ £37,970	£27,700에서 소득이 £2 상승하면 소득공제액이 £1이 감소.
£37,970 초과	£3,220

## □ 세율

- 영국은 개인의 소득을 일반 소득, 저축소득, 배당소득으로 나눈 후 세금 계산을 함
- 일반 소득(비 금융소득)
  - 개인의 대표적인 비 일반소득(ex. 근로소득 등)은 과세구간에 따른 세율에 의해 과세
  - 과세구간과 세율은 매년 개정
  - 2016/17 개인 별 소득세율

구 간	수 입	세 율
Starting rate	£11,000이하	납세 의무 없음
Basic rate	£11,000 ~ £43,000	20%
Higher rate	£43,000 ~ £150,000	40%
Additional rate	£150,000이상	45%

- 이자소득
  - 이전에는 발생하는 모든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나 2016년 4월 이자소득 과세에 대한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구간마다 일정금액의 이자소득이 비과세 적용 가능



- 소득자가 벌어들이는 연 수입이 £17,000 이하면 저축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 할 의무가 없으며, 연수입이 £17,000을 초과 한다면 과세구간마다 일정금액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후 그 이상의 이자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구간에 따른 일반소득 세율 적용
- 2016/17 구간별 이자소득 비과세 금액

구 간	비과세 금액
Basic rate	£1,000
Higher rate	£500
Additional rate	£0

○ 배당소득

- 배당소득이 £5,000 이하라면 비과세 적용되어 세금의 납세의무 없음
- 배당소득이 £5,000을 초과한다면 £5,000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납세 의무를 지게 됨
- 다른 유형의 소득이 있는 경우 타 소득을 먼저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계산
- 2016/17 배당소득 세율

구 간	비과세 금액
Basic rate (and non-taxpayers)	7.5%
Higher rate	32.5%
Additional rate	38.1%

□ 신고 및 납부

- 영국의 과세기간은 4월 6일 ~ 익년 4월 5일에 종료
- 근로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납부자는 PAYE를 통해 정산이 끝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출할 필요 없음

- 근로소득자나 연금소득자 중 일부는 과세기간이 끝난 4월 5일 이후 과다 납부나 과소 납부에 대하여 P800 서식을 받을 가능성 있음

**P800서식**

- 대상자
  - 종전 회사를 퇴사하고 같은 달 다른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
  - 연금을 수령하는 근로자
  - 근로지원수당 또는 구직자 수당을 받은 자
- 과다납부의 경우 7월에 환급되며, 과다납부의 경우 9월까지 납부

- 납세의무자는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님
- 종합소득세 신고(self assessment tax returns) 신고 기한

제출방법	기 한
우 편	과세기간 종료된 연도의 10월 말 자정
전 자	과세기간이 종료 다음 해의 1월 말일 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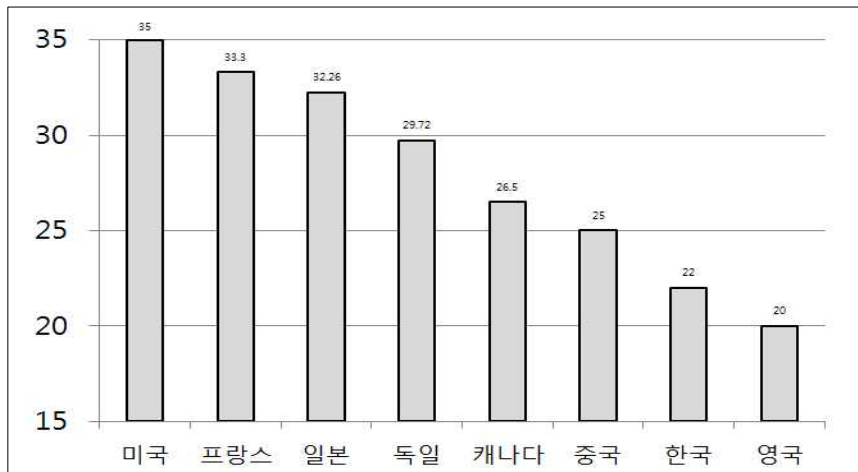
- 납부는 통상 1월 말과 7월 말에 2번 나누어 납부
- 종합소득세 자진신고제도는 과세대상 소득을 본인이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국세청에 관련 서류나 증빙을 바로 제출할 필요는 없음
- 신고 관련 서류나 증빙을 일정기간 보관하고 국세청의 열람요청에 언제든지 소득세 산출근거자료로 보여주어야 할 의무를 지님



## 2 법인세법

### □ 법인세 개요

- 1965년 이전에는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를 과세하였지만, Finance Act 1965로 법인세를 소득세에서 분리하여 과세하기 시작
- 이후 세법다시쓰기를 통하여 2010년에 Corporation Tax act 2010 발표
- 2015년 4월 영국의 법인세율 체계를 20%의 단일세율로 개편
  - 1997년 EU 국가들 중 10번째로 낮은 수준이던 영국의 법인세가 다른 국가들의 법인세율 인하경쟁으로 인하여 법인 기업이 이탈하는 현상 발생
  - 법인세 이탈을 막기 위해 3단계 누진구조의 형태의 법인세를 2011년부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였으며, 현재 20%의 단일세율 형태를 가지게 됨
- 영국과 주요 국가들의 법인세율 비교



- 영국은 OECD 국가들 중 법인세가 낮은 편이며, G7국가들 중 가장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2020년까지 법인세율을 18%까지 지속적으로 인하 할 것으로 발표



## □ 법인의 사업자등록

○ 기업이 회사를 등기소에 등기등록 ⇨ 영국 국세청에 통보되며 ⇨ 영국 국세청은 CT41-G 서식을 회사로 발송 ⇨ 회사는 CT41-G를 작성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 방식으로 제출해야 함 ⇨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내 사업 시작

○ 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

신청방법	소요시간	비 용
온 라 인	평균 24시간 내	£15
우 편	평균 8~10일	£40

○ 사업자 등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법인의 상호 및 주소, 주주(현황) 및 감사, 법인의 정관

## □ 납세의무자

○ 유한회사(Limited Company)

○ 영국에 설립한 외국법인의 지점 또는사무실 (Foreign Companies with a UK Branch or Office)

○ 사단법인(Most Unincorporated Association)

### 유한회사(Limited Company)

유한회사는 크게 3가지 형태로 분류

-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가 아닌 자선 단체와 같은 비영리 법인
- Private company limited by shares : 주주들이 자신이 처음에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로 일반인에게 주식양도 할 수 없음.
- Public limited company : 주식을 상장할 수 있고 일반인에게 판매가능한 기업으로 우리나라의 상장 주식회사와 유사



□ 영국의 내국법인 판정

- 내국법인은 전 세계에서 얻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 하지만 외국법인은 영국 내에서 얻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때문에 내·외국법인의 구분은 법인세법 상 중요
- 세법상 법인의 사업상 주소지를 판단하는 규정이 미 존재
  - 판례와 Sec. 64 and 66 Finance Act 1988에 따라 판단
  - 국세청은 Statement of practice 1/90을 발표하여 실질적 관리 장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만 사업상 주소지와 관련된 기준은 제공하지 않음
- 영국은 내국법인 판정기준으로 설립준거법과 실질적 관리장소주의를 채택
  - 영국에서 설립된 회사는 영국법인이며, 영국 밖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사업의 중요한 경영관리 및 지배 장소가 영국에서 수행 된다면 내국 법인으로 간주
  - 1988년 3월 15일부터 적용된 회사 설립장소 법적 테스트와 중요 경영 관리 및 지배의 장소테스트로 과세목적상 법인의 주소지를 결정함.
  - 영국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중요한 경영관리 및 지배의 장소 테스트로 법인의 주소지를 결정

중요한 경영관리 및 지배	
의 미	기업의 중요 정책의 결정을 의미하나 판례나 법률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
주 체	영국의 법인은 경영관리와 감독을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의 이사회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
장 소	이사회 회의 개최장소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보며, 1906년 DE Deers Consolidated Mines v Howe, H.L. 1906,5 T.C. 198는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의 해석을 이루는 판례로 사용



○ (판례) DE Beers Consolidated Mines v Howe, H.L. 1906,5 T.C. 198

<p><b>사실관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 Beers는 다이아몬드를 채굴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법인 설립 및 등기를 마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프리카공화국에 본사(head offices) 위치</li> <li>- 주주총회는 영국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li> <li>- 주주들은 통상 또는 비통상적인 회의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하지만, 이사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런던에서 회의를 개최</li> <li>- 과반 수 이상의 이사가 영국에 체류하였고 이사회 또한 영국에서 개최하여 일정금액 이상 (£25,000)지출 및 광산의 매매, 채굴시기, 이사의 임명 등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결정</li> <li>- 채굴활동이나 임금문제는 남아프리카에 거주하는 이사가 관장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영국에 거주하는 이사와 논의</li> </ul> </li> </ul>
<p><b>판결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상원법원(House of Lords)은 납세자가 영국 법인이라고 판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이 주소지는 법인이 실제로 영업을 수행하는 장소로 판단</li> <li>- 실제로 영업을 수행하는 장소는 중요한 경영관리 및 지배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판결</li> </ul> </li> </ul>
<p><b>결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에서 De Beers 판결 이전에는 설립준거법만을 적용하여 영국과세권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De Beers 판결 이후 당해 판결에 따라 실질적 관리장소주의 개념이 적용되었으며, 성문법규와 동일한 법률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li> </ul>

□ 사업연도

- 법인세 사업연도는 보통 12개월이며, 12개월 초과 불가
  - 12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 두 번의 법인세를 신고

(예시) 사업연도의 계산

- 기업의 회계기간은 2015. 7. 1.~2016. 6.30.으로 2015. 6. 5 법인설립
  - 첫 번째 회계기간 : 2015.06.05. ~ 2016.06.04
  - 두 번째 회계기간 : 2016.06.05. ~ 2016.06.30



□ 과세대상 소득

- 사업수익, 투자수익, 과세가능 이익으로 정의

과세대상소득의 예

- 영국 내 사업이익
- 이자, 연금, 로열티 및 기타 연차지불금
- 외국의 채권 등에 의한 소득
- 외국소재 자산으로부터의 소득
- 영국소재 부동산에서의 임대료 수입 및 프리미엄
- 국채 또는 지방채 수익

□ 공제 및 경감제도(Allowances and Reliefs)

공제제도(Allowances)	공제제도(Relief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공제 (capital allowance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공제(R&amp;D Relief)</li> <li>○ 특허박스공제(The Patent Box Relief)</li> <li>○ 창조산업공제(Reliefs for creative industries)</li> <li>○ 법인해산공제(Disincorporation Relief)</li> </ul>

□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s)

- 사업상의 자본지출에 대한 세금공제 방법으로 세금 목적으로 한 자산의 일관된 처리를 확보가능
- 회계연도의 기간이 12개월이 아닐 때에는 이용 가능한 자본공제는 회계연도 기간에 맞게 조정
- 자본공제가 가능한 항목으로는 장비(Equipment), 기계(Machinery), 사업용 자동차(Business Vehicles) 등

자본공제가 가능한 자산의 예	자본공제가 불가능한 자산의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에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 (ex. 자동차 등)</li> <li>○ 설비와 기계의 철거비용</li> <li>○ 설비 및 기계설치를 위한 건물의 구조변경</li> <li>○ 리프트,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등</li> <li>○ 냉난방 시설, 전기 시설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 자산</li> <li>○ 건물의 상하수도 시스템</li> <li>○ 토지 및 구조물(ex. 다리, 도로 등)</li> <li>○ 접대로 사용되는 자산 (ex. 노래방기계, 요트 등)</li> </ul>

- 초년도 100% 공제 가능 자산
  - 일부자산에 대하여 자산 구입 연도에 100% 자본공제 가능
  - 100% 공제 가능 자산
    - 낮은 이산화탄소 배출 차량
    - 에너지 절약 시설, 용수 절약 시설
    - 가스, 바이오가스, 수소연료 시설
- 연간 자본공제 한도 금액
  - 기업은 세전수익에서 자산에 종류에 따라 18%, 8% 자본공제가능
  - 2016년 연간 공제 가능 금액은 £ 200,000
- 자본공제 한도

기 간	공제 한도 금액
2016. 01 ~	£200,000
2014.04 ~ 2015.12.	£500,000
2013.01 ~ 2014.03.	£250,000
2012.04.~ 2012.12.	£25,000
2010.04 ~ 2012.03	£100,000



□ 특허박스 공제 (The Patent Box Relief)

- 2013. 4. 1. 도입된 공제제도로 지적재산권으로 수익을 창출할 경우 일반 세율보다 낮은 세율인 10% 적용

지적재산권 소득 범위

- 특허가 적용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 특허권의 임대
- 특허권의 판매
- 특허권 침해로 인한 보상 소득
- 그 밖에 특허권과 관련된 보상

- 특정 나라에서 받은 특허권으로 창출한 소득에만 공제가능

특허권 승인 허용기관 또는 국가

- 영국 특허청
- 유럽 특허청
- 유럽 경제 지역 중 다음 나라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스웨덴,

□ 연구·개발 공제(Research and Development Tax Relief)

- 1962년부터 시작된 법률로 기업의 과학연구 지출금액에 대하여 공제 가능
- 공제 관련 항목으로는 연구직원의 수당, 연구관련 하청 및 외주 관련 비용, 연구에 사용 되는 소프트웨어 비용 등이 있음
- 기업에 규모에 따라 감면 지출금액의 230% 또는 130% 공제 가능

□ 창조산업 공제(Reliefs for Creative Industries)

-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는 기업이 극장, 필름, 방송, 애니메이션, 비디오게임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있을 때 경감 가능한 제도로 별도 테스트(Cultural Test)를 통과 시 경감 가능
- 제작관련 비용 중 10% 이상이 영국에서 지출된 것임을 증빙해야 함
  - 사전제작비용, 주요 촬영 비용, 포스트 제작비용 등이 핵심지출비용에 속함
- 경감 가능한 산업의 종류

종 류	정 의
필 림	○ 영국 내 극장 개봉을 위해 필름 제작
애니메이션	○ 제작비용 중 51% 이상이 핵심지출비용이며 방송용으로 제작된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
방송 프로그램	○ 고화질의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한 것에 대하여 공제가능 ○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는 드라마, 코미디, 다큐멘터리가 있음
어린이 프로그램	○ 어린이(15세 미만)를 위한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 시 공제가능 ○ 퀴즈, 게임쇼, £1000를 초과하지 않는 상금을 지불하는 프로그램에 적용 가능
비디오 게임	○ 핵심지출비용의 25% 이상이 유럽에서 지출되는 비디오 게임제작에 한하여 공제가능

□ 법인전환 공제(Disincorporation Relief)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 공제하는 제도

법인전환 공제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속기업 가정</li> <li>○ 기업의 현금과 사업상 자산 등을 모두 이전하여야 함</li> <li>○ 이전하는 자산의 시가 총액이 £100,000 이상이어야 함</li> <li>○ 자산을 이전받는 법인의 주주는 개인이어야 함</li> <li>○ 자산을 이전하기 전 주주는 12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li> </ul>



□ 세율

- 1980년대 중반에는 법인세율이 52%에 달하였으나 공장과 기계설비에 대한 공제가 사라지면서 35%로 낮아졌고, 1999년 30%, 2008년에 28%로 점차 낮아지면서 현재 법인세율인 20%에 이릅니다.
- 2014년까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세율차이가 존재하였으나, 현재 세율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2015. 4. 1. 소기업세율과 표준공제 세율에서 적용되던 한계공제 제도 폐지
- 2010~2016 영국의 법인세 변화

연도	소기업 요건(이익)	소기업세율	표준세율
2010	300,000	21%	28%
2011	300,000	20%	26%
2012	300,000	20%	24%
2013	300,000	20%	23%
2014	300,000	20%	21%
2015	-	20%	20%
2016	-	20%	20%

□ 법인세 신고

- 영국은 회사가 세금계산을 스스로 수행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 신고 납부제도(Self-assessment for companies)를 1999. 7월 도입
- 법인의 신고서 및 법인세법상 손익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후 제출 시 가산세 부과
  - 연차보고서상 손익계산서에서 세무조정을 통하여 법인세법상 손익계산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기한후신고 가산세

지연기간	가 산 세
1일	£100
3개월	추가 £100
6개월	국세청이 세금을 결정하고 결정된 세금의 10%
12개월	추가 10%

□ 법인세 납부

- 일반적으로 사업연도가 끝나 후 9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
- 과세이익이 £1.5백만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4번에 나누어 분할 납부 하여야 함

<회계기간이 2015.01.01. ~ 2015.12.31. 기업>

납 부	분할 납부기한
1회차	7월 14일
2회차	10월 14일
3회차	1월 14일
4회차	4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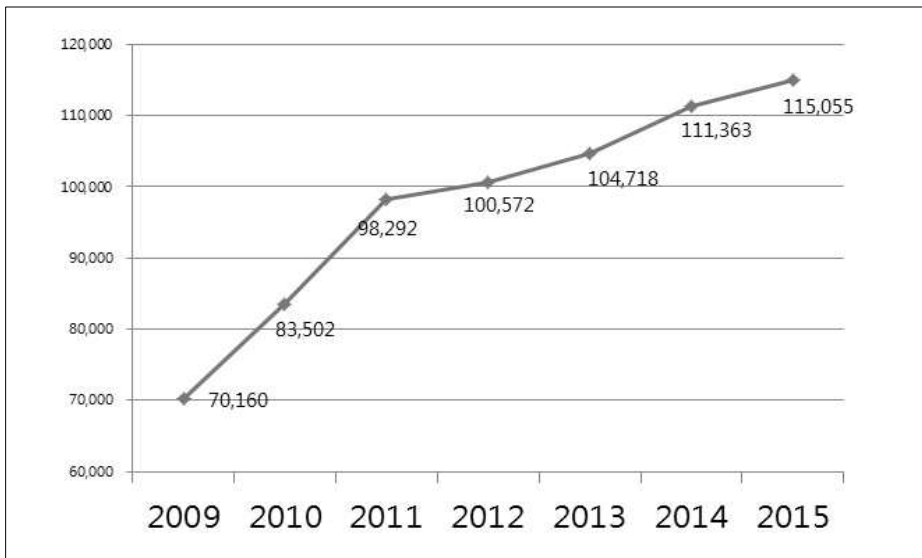
- 납부는 BACS, CHAPS 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 납부 가능



### 3 부가가치세

#### □ 부가가치세 개요

- 1973년 1월 영국이 유럽경제공동체(ECC) 가입함에 따라 1973년 4월부터 부가가치세 도입
  - ※ 부가가치세 도입 이전에는 소비세의 일종인 구매세 운영
-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서 지속적으로 세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세목 중 하나
- 2009-2015년 부가가치세 세수 현황



-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방식을 채택
- 부가가치세의 법률상 근거 : Value Added Tax Act 1994, Finance Act
  - EU의 Principal VAT Directive(2006)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
  - 과세 당국에서 제정한 규정(Statutory Instruments)을 바탕으로 운영



###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여 등록하거나 등록이 요구되는 자로 개인, 기업, 법인격 없는 사체, 법인, 그 밖의 단체를 포괄함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연간 과세 매출액이 임계점 (Threshold)을 초과하면 사업자등록 의무 존재

사업자의 형태	임 계 점
일반 사업자	£83,000
비대면 거래(distance selling) 사업자	£70,000

- 일정 영역 사업자는 매출액 수준에 상관없이 등록가능
- £83,000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경우 30일 이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이며, 미등록 시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일시적으로 매출이 £83,000초과했다면 증명을 통해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때 매출의 일시적 상승과 이후 12개월 동안 £83,000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함
- 과세 매출액이 £81,000이하로 하락할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취소 요청 가능

### □ 과세대상

-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형태의 사업품목에 과세가 적용

과세대상 거래
○ 재화의 공급 : 상품 및 사업상 자산의 판매, 자가사용 등
○ 용역의 공급 : 용역의 제공, 중개수수료 등
○ 재화의 수입
○ 특정용역의 수입



□ 재화 및 용역의 공급

- 재화의 공급
  - 재화의 공급은 계약 등에 의해 재화가 이동하거나 양도
  - 재화의 이동을 수반되지 않지만 공급 받는 자가 사용가능한 경우
  - 재화의 개인적 사용
- 용역의 공급
  - 역무의 제공
  - 시설물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권리 등의 대여
- 재화의 수입
  - 외국으로부터 물품이 영국내로 반입되는 것

□ 공급시기

-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의 시기

공급의 형태	공급 시기
세금계산서 미발행	공급한 날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한 날
공급 후 15일 이상 경과 후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한 날
대금 선지급 후 세금계산서 발행	빠른 날 (세금계산서 발행일, 대금지급일)
대금 선지급 후 세금계산서 미발행	대금의 지급일

- 재화의 할부 판매(2번이상의 대금 지급)의 경우 대금의 최초 지급일과 최종 지급일을 공급시기로 봄
- 용역의 공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역무 제공이 끝나는 때로 봄

□ 공급장소

- 공급장소(place of supply)란 공급이 발생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납부되는 장소로 과세 관할권을 결정하는 중요 개념
- 재화의 공급 장소

공 급 형 태	공 급 장 소
영국 역내 소재하는 재화 공급	영 국
영국 역외 소재하는 재화 공급	역 외
영국 내 설치·조립하는 재화	영 국
영국 역외 설치·조립하는 재화	역 외
영국 → EU회원국 공급	영 국
영국 → EU회원국 공급 중 비대면 판매 (distance selling)	EU회원국
EU회원국 외의 국가에서의 재화수입	영 국
EU회원국 → 영국 (비대면 판매제외)	EU회원국

- 용역의 공급 장소는 국제거래의 이중과세나 비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여러 규정이 존재함
- 공급 장소에 관한 일반 원칙

거 래	공급장소
B2B (Business-to-Business)	공급받는 자가 소재하는 장소
B2C (Business-to-Customer)	공급하는 자가 소재하는 장소

- (2010년 1월 법률 개정 전) 용역의 공급 장소는 공급하는 자의 주소지
- (법률 개정 후) 거래에 따른 공급 장소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 적용

□ 세율

- 연도별 표준 부가가치세율 변화

연도	1973	1991	2008	2010	2011
세율	10%	17.5%	15%	17.5%	20%



- 부가가치세 세율은 재화 및 용역에 종류에 따라 3가지 다른 세율이 적용  
- (표준세율) 20%, (경감세율) 5%, (영세율) 0%

□ 면세제도

-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자의 부가가치를 면제하는 것으로 면세물품을 공급할 때는 매출세액 납부 할 필요가 없지만 매입세액 또한 환급 되지 않음
- Value Added Tax Act 1994 Schedule 9 Exemptions에 면세물품 열거

번 호	면세대상
Group 1	토지
Group 2	보험
Group 3	우편 서비스
Group 4	도박, 복권, 내기
Group 5	금융서비스
Group 6	교육
Group 7	의료보건 및 복지
Group 8	장례
Group 9	노동조합 및 기타공익단체의 경비
Group 10	스포츠 : 스포츠경기 및 교육
Group 11	예술창작품
Group 12	자선사업이나 다른 적격단체에 의한 기금마련 행사
Group 13	문화 서비스
Group 14	매입세액을 알 수 없는 재화의 공급
Group 15	투자목적의 금

□ 영세율

-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공급가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사업자가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하여 주는 제도
-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는 완전면세제도

○ 영세율 품목은 Value Added Tax Act 1994 Schedule 8 Zero-rating 열거

번호	영세율 대상
Group 1	식료품 : 배달, 음식점, 포장음식 제외
Group 2	하수도 서비스 및 용수
Group 3	서적 및 기타출판물
Group 4	장애인을 위한 용품 : 음성지원 책 및 무선전화세트
Group 5	건물의 건설 : 신축 및 자선단체사용을 위한 건물
Group 6	기존건물에 대한 교체
Group 7	국제 서비스
Group 8	운송
Group 9	이동주택 및 숙박시설 요트
Group 10	금
Group 11	지폐
Group 12	장애인을 위한 의약품과 보조기구
Group 13	특정 수입 및 수출
Group 14	면세점
Group 15	특정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
Group 16	특정 의류 및 신발 : 아이들을 위한 의복 및 몇가지 보호의류

□ 경감세율

- 특정 품목에 대하여 예외로 5%의 낮은 세율이 적용
- 경감세율 품목에 대하여 Value Added Tax Act 1994 Schedule 7A Charge at Reduced Rate에 열거

번호	경감세율 품목
Group 1	국내연료 및 전력
Group 2	에너지 절약기구 설치
Group 3	난방시설, 보안시설,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및 연결
Group 4	여성 생리용품
Group 5	어린이용 카시트
Group 6	이사용역
Group 7	특정 주택 리모델링 등



□ 세금계산서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가 기본적인 거래증빙서류로 사용
-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송해야 함
-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송장 발급 시기 및 고유송장번호
- 공급자 성명, 주소, 부가가치세상 번호(사업자번호)
- 공급일, 공급하는 물품
- 공급 받는자 성명(상호) 및 주소
-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3개 그룹으로 3개월 단위로 구분하여 운영

그 룹	과세기간
Group 1	6월 30일 / 9월 30일 / 12월 31일 / 3월 31일
Group 2	7월 31일 / 10월 31일 / 1월 31일 / 4월 30일
Group 3	8월 31일 / 11월 30일 / 2월 28일 / 5월 31일

- 사업자 등록 시 세 그룹 중 한 그룹에 배정되며, 사업자 등록을 요하는 자가 등록하지 않을 경우 그룹1에 강제 배정
  - 배정받은 이외의 과세기간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과세기간 변경 가능
- 환급이 발생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을 1개월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가능
  - 지정한 자가 환급세액 대신 납부세액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경우 과세기간을 3개월로 변경해야 함

□ 연차회계제도(Annual Accounting Scheme)

-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135만 이하)는 연1회 신고납부하는 것을 허용
- 연차회계제도를 적용받기 시작하면 별도의 신청없이 매년 자동으로 적용되며, 사업자는 연간 공급가액이 £160 초과 할 때까지 계속 적용가능
- 납세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연차회계제도를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할 경우 12개월 동안은 재적용 불가

연차회계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사업자

- 직전 12개월 이내에 연차회계제도의 적용을 중단한 자
- 부가가치세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자
-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자
- 기업 내 그룹이나 부서로서 부가가치세 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중간예납제도(Payments on Account)

- 부가가치세 조기징수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중간예납제도 적용 - 3개월의 과세기간을 적용하고, 연간 납부액이 £230만 이상인 사업자
- 중간예납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중 두 번째 및 세 번째 마지막 근무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
- 기준연도의 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230만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 6개월 후 중간예납제도 적용 중단 가능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다음달 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서면신고방식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함



○ 부가가치세 1그룹의 신고납부기한

과세기간 종료일	신고납부기한	
	전자신고·납부	서면신고·납부
6월 30일	8월 7일	7월 31일
9월 30일	11월 7일	10월 31일
12월 31일	2월 7일	1월 31일
3월 31일	5월 7일	4월 30일

○ 중간예납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한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연차회계제도의 납부 기한

- 과세기간이 종료한 날의 2개월 후 말일까지 납부
- 연차회계제도 적용받는 사업자는 선택에 따라 연 9회 또는 연 3회 국세청이 고지하는 기한에 중간예납을 해야 함
  - ※ (9회 중간예납 하는 자) 연간 부가가치세액의 10%를 월별 납부
  - ※ (3회 중간예납 하는 자) 연간 부가가치세액의 25%를 분기별로 납부

○ 연차회계제도 적용 시 납부시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월 별 납 부				○	○	○	○	○	○	○	○	○		최종 납부
분기별 납 부				○			○			○				최종 납부



# 4 국제조세

## 1) 이전가격세제

### 가. 이전가격세제 개요

#### □ 이전가격세제 의의

- 영국 내 소재한 기업이 국내 또는 국외에 소재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시 독립적인 제3자와의 거래가격과 다른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과세대상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당해 소득을 재계산하는 제도

#### □ 이전가격세제 법령

- 영국 이전가격세제는 Taxation(International and Other Provisions) Act 2010 Part 4(이하 TIOPA 2010 Part 4)에 규정
  - 총 8개 CHAPTER와 71개 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음.

CHAPTER	SECTION	내 용
1	146 ~ 148	○ 이전가격세제의 기본적 원칙
		· 이전가격세제의 목적 · 이전가격세제의 적용 조건
2	149 ~ 164	○ 이전가격세제 개괄
		· 주요용어에 대한 해석 및 특수관계자 조건 · OECD 이전가격지침의 적용
3	165 ~ 173	○ 이전가격세제 면제조항
4	174 ~ 190	○ 보상조정 (Compensating Adjustment)
5	191 ~ 194	○ 과소자본세제 (Thin Capitalization)
6	195 ~ 204	○ 조정지급 (Balancing Payments)
7	205 ~ 206	○ 석유 관련 울타리 무역 (Ring-fence Trade)
8	207 ~ 216	○ 이전가격세제 기타사항
		· 뮤추얼펀드 적용 및 이전가격세제 관련 승인 및 항소 · 기타조항



□ 이전가격세제 연혁

연도	주요 내용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9. 7. 1. 이후에 끝나는 과세기간에 대해 Schedule 28AA ICTA 1988이 시행됨으로써 이전가격세제 최초 적용</li> <li>• APA 최초 적용</li> </ul>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 4. 1. 이후에 끝나는 과세기간부터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법인인 거래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 모두 내국법인인 거래에도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었으며, 이 경우 중소기업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면제조항을 신설함.</li> <li>• 과소자본세제가 이전가격세제에 편입됨.</li> </ul>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 4월 이전가격세제 전담조직 출범으로 관련 조사 강화됨.</li> </ul>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9. 4. 1. 이후에 끝나는 과세기간에 대해 이전가격세제 신고 관련 부주의, 의도적인 오류 등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기 시작함.</li> </ul>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 4. 1. 이후에 끝나는 과세기간부터 TIOPA 2010 Part 4 적용주)</li> <li>• OECD 이전가격지침 전면도입</li> </ul>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 4. 1. 이후에 끝나는 과세기간부터 2010 OECD 이전가격지침을 반영함.</li> </ul>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세제 규명 및 과세를 포함한 조세회피 대응 역량 강화(대규모 기업부문 위험평가 역량 강화)</li> </ul>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 10. 25. 이후에 끝나는 과세기간부터 과소자본세제와 관련하여 개인과 회사와의 자금대여 관계 성립 및 이후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개인에 대한 보상조정을 제한하게끔 개정됨.</li> </ul>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 4. 1. 이후에 끝나는 과세기간부터 징벌적 성격의 우회이익세(Diverted Profits Tax)를 도입함.</li> <li>• 2015. 11월 G20 정상회의를 통해 BEPS 프로젝트 최종 합의</li> </ul>

주) 영국은 1997년부터 추진된 세법다시쓰기 프로젝트(Tax Law Rewrite Project)에 따라 국제조세규정을 보다 합리적·논리적으로 개편하였고 세법을 이해하기 쉽게 재정비하였음.

## □ 이전가격세제 주요 용어 및 해석

【(英) Person】

【(韓) 인】

- 개인, 법인 및 단체, 조합과 자선단체 또는 공익단체를 포함하는 개념

【(英) Transfer Price】

【(韓) 이전가격】

- 두 당사자 간 거래에서 설정된 가격

【(英) Transfer Pricing】

【(韓) 이전가격세제】

- 특수관계 아닌 당사자 간 거래에서는 설정되지 않았을 가격이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설정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당해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재설정하여 과세소득을 재계산하는 제도

【(英) Provision】

【(韓) 거래 또는 계약으로 해석하되, 보다 광범위한 개념】

- TIOPA 2010 / S147(1)(a)에서 Provision에 대해 정의
- 하나 또는 일련의 거래(a transaction or series of transaction)에 의해 2인(Person) 사이에 성립되거나 부과된(made or imposed) 모든 계약조건을 포괄함.
- 법적 구속력 여부를 떠나 계약, 암묵적 합의(understandings), 상호관행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

【(英) Actual Provision】

【(韓) 특수관계자 간 거래】

-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실제 또는 현실의 거래’로 해석되나, 이전가격세제에 있어 Actual Provision은 후술하는 Arm's Length Provision, 즉 정상가격거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해석됨.

## 【(英) Arm's Length Principle】

## 【(韓) 정상가격원칙】

- OECD 모델조세협약 제9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OECD 회원국 사이에 상호 공평한 조세목적 달성을 위해 국제적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가격 결정 시 사용하기로 합의한 국제적 기준
-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성립되는 가격은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가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 시 성립되는 가격과 유사해야 하며, 이 때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은 독립된 자와의 거래에 따른 결과에 비추어 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 【(英) Arm's Length Provision】

## 【(韓) 정상가격거래】

- 정상가격원칙을 반영한 거래

## 【(英) Transaction】

## 【(韓) '거래'로 해석하되, Provision보다 좁은 개념】

- TIOPA 2010 / S150에서 Transaction에 대해 정의
- Provision과 마찬가지로 계약, 암묵적 합의, 상호관행을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Provision, Transaction 공히 '거래'로 해석하고자 함.

## 나. 이전가격세제 적용

## □ 이전가격세제 적용요건

- 하단의 기본전제조건을 만족하고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인 또는 다수의 인 (Person)에게 잠재적 이점(Potential Advantage)을 제공할 때 적용됨.

## &lt;기본전제조건&gt;

- ① 두 거래당사자(Two persons) 간 하나의 거래(A transaction) 또는 일련의 거래(Series of transactions)에 의하여 계약(Provision)이 성립되어야 함.

- ② 참여자 조건(Participation Condition)이 충족되어야 함.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지분, 경영, 지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 제3자가 거래당사자 모두의 지분, 경영, 지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 ③ 특수관계자 간 거래(Actual Provision)와 정상가격거래(Arm's Length Provision) 차이로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잠재적 조세부담의 감소가 발생되어야 함.

#### <특수관계 판정>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할 때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봄.

- 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타방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며, 타방은 일방의 사업 또는 경영과 관련된 방침을 따르고 그 이익을 수행할 때
- ② 거래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4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 ③ 금융거래에 있어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제3자 등과 공동으로 타방에게 금융을 제공하며, 이 때 거래당사자는 공동자금대여에 대한 모든 권리를 지니고 있을 때

#### □ 이전가격세제 면제

##### ○ 이전가격세제 면제 개요

- 2004. 4. 1. 이후부터 중소기업(SME)에 의한 대부분의 거래에 대해 이전가격세제 적용이 면제됨.
  - \* (SM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 중소기업의 정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2003. 5. 6. 발표한 소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에 대한 개정안(2003/361/EC)을 따르고 있으며, 이 때 중소기업의 판단은 직원 수, 외형 및 자산총액에 의함.

(단위 : 백만)

회사 범주	직원 수	외 형	자산총액
중견기업(Medium-sized)	250명 미만	AND € 50 이하	OR € 43 이하
중소기업(Small)	50명 미만	AND € 10 이하	OR € 10 이하
소기업(Micro)	10명 미만	AND € 2 이하	OR € 2 이하

※ 기업그룹이거나 계열회사가 있을 경우 그룹 내 모든 회사 및 계열회사의 직원 수, 외형, 자산 총액의 합으로 중소기업 등을 판단함.

○ 이전가격세제 면제의 예외

- 무차별원칙조항 및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의 중소·중견 기업

무차별원칙조항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국가(가나다 순)

가나, 가이아나, 감비아, 그리스,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레소토, 레위니옹,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비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모리셔스, 몰도바, 몰타, 몽골리아, 미국, 미얀마, 바베이도스,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볼리비아, 불가리아, 러시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수단, 스리랑카, 스와질란드,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에스토니아, 오만,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요르단,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공화국, 일본, 자메이카, 잠비아, 조지아, 중국, 짐바브웨, 체코 공화국, 칠레, 카자흐스탄, 카타르, 캐나다, 케냐, 코트디부아르,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타지키스탄, 태국,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파푸아 뉴기니, 페로 제도, 포르투갈, 포클랜드 제도, 폴란드, 프랑스, 피지, 핀란드, 필리핀 제도, 헝가리, 홍콩

- 영국 국세청은 특정 거래에 대하여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이전가격세제 적용 면제에 대한 예외가 됨.  
 ⇨ 영국 국세청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상기 예외조항에 근거하여 언제든지 이전가격세제 이슈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중소·중견기업 또한 이전가격세제에 대비한 사전준비가 필요함.

- 중소·중견기업이 특허박스 세제혜택과 관련된 거래의 일방인 경우

**<특허박스 (Patent Box)>**

- 지적재산권으로 수익을 창출할 경우 일반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제도로 기업에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수입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것을 특허박스 제도라고 함. 현재 특허박스 관련 이익에 대해 10%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 이전가격세제 보상조정**

○ 이전가격세제 보상조정의 의의

- (개념)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있어 일방이 이전가격세제에 의해 조정이 이루어질 때 잠재적 이익을 향유하지 못한 타방은 TIOPA 2010 / S174 에 근거하여 과세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를 보상조정이라 함.
- (목적) 이전가격세제에 의한 이중과세 방지

○ 이전가격세제 보상조정 요건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보상조정이 가능함.
  - ① 특수관계자 간 거래(Provision)로 일방이 당해 거래의 이익을 향유함.
  - ② 당해 거래의 타방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어야 함.
  - ③ 이익을 향유한 일방은 정상가격원칙에 근거하여 신고를 해야 함.
- (회계기간이 다른 경우) 타방은 기 신고내역을 정정해야 하며, 일방이 정상가격에 근거하여 신고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수정신고 가능함.

**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 정상가격 산출방법 개요**

○ 정상가격 산출방법 변천사

- (1995 OECD 가이드라인) 엄격한 계층구조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나누었으며,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임.



- (2010 OECD 가이드라인) 자연적 계층구조를 표방하였으며, 전통적 방법 뿐만 아니라 거래이익방법 공히 동등하고 유사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으며, 특정 케이스에 가장 적합한 산출방법을 사용해야 함을 강조함.
- 2010 OECD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을 선호함.
  - OECD 이전가격지침 상의 모든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용이 가능함.
  - (한계점) 비교가능하고, 특수관계 아닌 자와의 독립된 거래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정) 공식적인 지침 또는 우선순위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선호함.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 호 도
전통적 방법 vs 거래이익방법	○ 전통적 방법 (Traditional Transaction Methods) 과 거래이익방법 (Transactional Profit Methods) 모두 적용 가능한 경우 전통적 방법을 선호함.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vs 그 외 산출방법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과 다른 산출방법이 적용 가능한 경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이 가장 선택됨.

□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 비교가능성의 의의
  - 이전가격과세 시 비교가능성을 근거로 과세조정이 일어나는 만큼 이전 가격세제에서 비교가능성은 핵심개념이라 할 수 있음.
  - (정상가격 산출방법) 어떤 산출방법을 택하더라도 검증된 거래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입증되어야 함.
  - (OECD 이전가격지침) Paragraph 1.33 ~ 1.63 까지 비교가능성을 다룸.



○ 비교가능성 분석

- OECD 가이드라인의 Paragraph 3.4에서는 비교가능성 분석 시 활용 가능한 9가지 단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단 계	주 요 내 용
Step 1	· 비교가능성 분석 시 적용할 회계연도 결정
Step 2	· 납세자의 상황, 정황 등을 토대로 한 광범위한 분석
Step 3	· 특수관계자 간 거래 및 조작된 거래에 대한 이해 · 거래이익방법에 대비한 재무지표 선정
Step 4	· 내부 비교가능거래 검토 - 동일 거래에 대해 비교가능한 제3자 거래가 있을 수 있음. - 대기업 집단의 경우 상당수 고객과의 거래가 있으므로 가격 및 계약조건에 대한 비교분석이 가능함.
Step 5	· 외부 비교가능거래 검토 - 신뢰성 있는 외부 거래 중 사용가능한 정보에 대한 결정
Step 6	·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 - 산출방법에 따라 재무지표 결정이 필요할 수 있음.
Step 7	· 가능성 있는 비교가능거래 확인
Step 8	· 비교가능거래 결정
Step 9	· 정상가격에 입각한 보상결정

□ 정상가격 산출방법 개관

○ 전통적 정상가격 산출방법 (Traditional Transaction Methods)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CUP,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거래(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 등)와 유사한 거래를 독립된 제3자와 거래할 경우 비교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때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재판매 가격법(Resale Minus)>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자산 거래 후 거래의 일방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그 자산을 재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원가가산방법(Cost Plus)>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과정 중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이윤을 가산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 거래이익 산출방법(Transaction Profit Methods)

<이익분할법(Profit Split)>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국제거래에서 거래 쌍방이 공동으로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하여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거래순이익률법(TNMM,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거래(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 등)와 유사한 거래를 독립된 제3자와 거래할 경우 비교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 때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 정상가격 산출방법 상세내역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CUP,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영국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원재료를 수출하는 경우



⇒ 독립적 제3자와의 거래가 비교가능하다면 €500를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음.

- OECD 이전가격지침에 의하여 현재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간 계층구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정상가격인지 확인하는 가장 간단하고 직접적임 방법으로 볼 수 있음.
- HMRC INTM421030에 따르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과 타 산출방법이 동일하게 신뢰가능하다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이 일반적으로 더 선호됨.
- 비교가능거래는 다음의 요소가 고려되어야 함.

고려요소	동일성 확보 사유
제품의 동일성	○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할 때와 소량으로 판매할 때 계약 조건이 달라지므로 거래제품이 동일해야 함.
거래시기의 동일성	○ 거래시기에 따른 경기변동 및 시장환경에 따라 이자율, 인플레이션 등이 달라지므로 거래시기가 동일해야 함.
거래조건의 동일성	○ 할인정책, 대금지급조건 등에 따라 계약조건 및 결제금액이 달라지므로 거래조건이 동일해야 함.
거래시장의 동일성	○ 거래시장에 따라 판매방식, 이익률, 할인을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시장이 동일해야 함.

- 요소 차이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가능하다면 비교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봄.  
ex) 제3자와의 거래 시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해당 거래에서 인플레이션 비율을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음.
- 신뢰할만한 제3자간 거래의 식별이 어려워 실제 적용에 한계가 있음.
- DSG Retail and others v HMRC (이전가격세제 관련 영국 국세청 승소건) 사례를 통해 비교가능거래 식별의 어려움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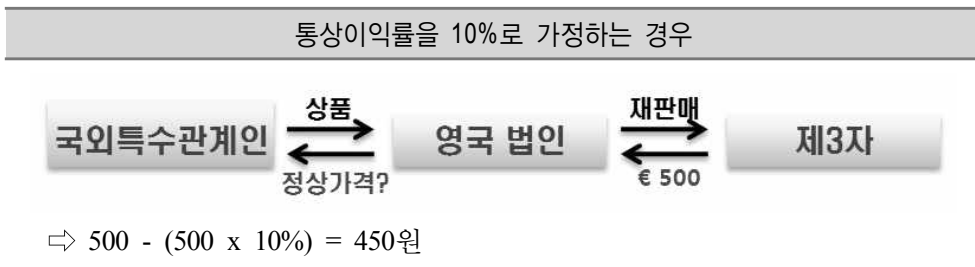
사실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ixons Stores Group (이하 DSG) Retail은 전자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각종 전자기기 판매 시 연장워런티(EW, Extended Warranties, 전자기기 고장 등 유지보수를 위한 보험)를 판매하였음.</li> <li>○ 연장워런티는 DSG Retail이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맨섬에 소재한 제3자 소유의 법인이 고객과 워런티계약을 맺었으며, DSG Retail은 단순 판매대리만을 하였음.</li> <li>○ 제3자 소유의 법인은 연장워런티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DSG 그룹에 속한 보험회사인 DISL과 재보험계약을 체결함.</li> </ul>



DSG Retail and others v HMRC	
HMRC	DSG 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MRC는 DISL과의 재보험계약이 정상가격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영국 내 DSG Retail 매장의 연장워런티 대리판매 업무와 관련한 이익의 공헌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SG 그룹은 연장워런티 판매에 따른 이익이 DSG Retail 매장에 적절하게 보상되었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을 반영한 수수료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주장함.</li> </ul>
심 리 결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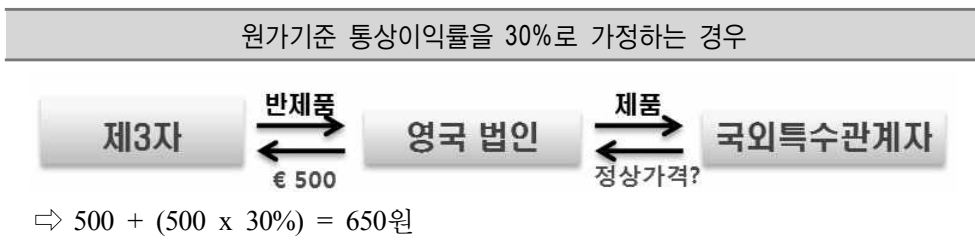
- 이 사건의 심리를 맡은 위원회는 비교가능거래를 찾을 수 없고,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합리적 조정을 허용할 정도의 증거 또한 없다고 하여 HMRC의 손을 들어줌.
- DSG 그룹이 증거로 제시한 거래시기, 전자기기 시장, 상품의 종류, 판매방법은 비교가능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됨.

○ 재판매 가격법(Resale Minus)



- 유통업에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함.

○ 원가가산법 (Cost Plus)



- 반제품이 특수관계자 간 거래될 때, 특수관계자 간 공동설비계약을 맺는 경우, 용역공급계약에 의해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있을 경우, 장기구매 공급계약을 맺는 경우 활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 재화나 용역 제공에 따른 비용을 산출하고 당초 발생한 원가에 공급자에 대한 이윤보상 및 시장조건에 따른 이익률을 가산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함.
  - ※ 공급자에 대한 이윤은 비교가능한 제3자 간 거래(비교가능거래)에 따른 이윤에 따라 계산함
- 공급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특수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원가 가산방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정상가격 산출 시 원가, 이송에 따른 보상, 이송 관련 리스크까지 계산하여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산출해야 함.
- 리스크 계산 시 거래의 종류, 리스크 부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야 함.
  - ※ 모회사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생산된 모든 산출물을 그 규모에 관계없이 모회사가 구매하는 것이 보장된다면 리스크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익분할법 (Profit Split Method)

이익분할 측정기준	⇨ 잔여이익 분석
상대적 공헌도	⇨ A : B = 2 : 3



- 정상거래순이익 계산
  - (영국 법인의 정상거래순이익)  $300 \times 2/5 = 120$
  - (국외특수관계자의 정상거래순이익)  $300 \times 3/5 = 180$
- 정상가격 산출
  - (영국 법인의 정상가격) 원재료 100 + 제조비용 200 + 거래순이익 120 = 420



○ 이익분할 측정 기준

측정기준	주요내용
기여도 분석 (Contribution Analy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할대상이 되는 총이익은 각 당사자의 역할 또는 기능의 상대적 비율에 근거하여 분할이 가능함.</li> <li>○ 이익창출이 제품 본연의 가치에 있는 경우 ⇒ R&amp;D를 수행한 기업에 더 많은 이익을 분여해야 함.</li> <li>○ 마케팅 활동으로 높은 매출을 올린 경우 ⇒ 유통에 좀 더 많은 이익을 분여해야 함.</li> </ul>
잔여이익 분석 (Residual Analys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의 당사자는 수행한 기능에 따라 기본적 보상(Basic Return) 및 추가 이익이 분배됨.</li> <li>○ 기본적 보상은 각 거래 당사자의 가치있는 기여도가 고려되지 않음.</li> <li>○ 기본적 보상이 할당된 후 남은 이익 또는 손실을 기여도 및 시장에서의 상대적 교섭지위에 따라 분배함.</li> </ul>

- 다양한 거래가 얽혀있는 복잡한 거래관계에서 활용 가능함.
- 각각의 연결된 당사자(특수관계자)에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상호 간 관계를 제거하고, 각자가 독립적이었다면 이익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계산하여 배부함.
-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어느 일방의 정상가격만을 산출하고 그 거래상대방인 타방은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익분할법은 일방 및 타방 모두의 이전가격을 산출할 수 있음.

○ 거래순이익률법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거래순이익률을 10%로 가정하는 경우



⇒  $(500 - \text{정상가격} - 100) / 500 = 0.1$

⇒ 위 계산에 의하여 정상가격은 350

- 이전가격을 설정하는데 있어 대중적으로 가장 대중적으로 활용됨.
- 거래순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또는 영업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거래순이익률법은 매출에 대한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출함.
  - ⇒ **【거래순이익률】** = 매출 - 정상가격 - 판매관리비 또는 영업비
- 순이익지표는 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정확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할 확률이 높음.
  - ex) 비교가능거래 기업 경영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반해, 분석대상기업의 경영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순이익지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라. 이전가격문서화

### □ 이전가격보고서 구성요소

- 주요회계장부(Primary Accounting Records)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으로 구성됨.
    - ※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결과가 포함되며, 이 거래는 실제 결과 값이므로 정상가격에 대한 판단 및 조정은 세무조정계산서에 의함.
- 세무조정계산서 (Tax Adjustment Records)
  - 이전가격세제에 따른 정상가격원칙을 반영한 세무조정을 포함함.
- 관련기업 간 거래장부(Records of Transactions with Associated Businesses)
  -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관련기업 간 거래장부
- 정상가격산출 증거(Evidence to Demonstrate “Arm’s Length” Result)
  - 특수관계자 간 거래(실제 거래)에 대해 이전가격세제를 반영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임을 밝히는 증거를 포함함.

### □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관련 주요지침

- ① 세무당국은 이전가격문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이전가격보고서에 대한 특정양식 또한 존재하지 않음.



-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는 이전가격세제 조사대비 및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 충분한 장부를 갖춰야 함.
- ③ 이전가격보고서 작성 시 가능한 영어로 작성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④ 그룹 내부거래가 있다면 당해 거래에 대한 상세내역을 제공할 것을 기대함.
- ⑤ 이전가격에 대한 기능, 위험요인 등을 명시할 것을 기대함.

### 마. 가산세 (Penalties)

#### □ 이전가격세제 가산세 개요

##### ○ 가산세 적용

- 정상가격 산정 시 부주의 또는 태만(Careless or Negligent)이 있었고, 그 결과 부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 이전가격산출을 뒷받침하는 이전가격보고서 미작성 시

##### ○ 부주의 또는 태만

- 적절하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뜻함.

#### □ (사례연구) 단순 이전가격세제 적용

- (사례 #1) 정상가격 산출 시 합리적인 판단근거가 있었음.

##### 사실관계

- 영국에 소재하는 갑 회사는 그룹 내 계열사인 특수관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당해 서비스에 대해 정상가격 산출 시 원가가산법 8%를 적용하였음.
  - 당시 이용가능한 산업데이터를 근거로 원가가산법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비교가능한 제3자 간 거래가 8%임을 확인함.
- 이전가격세제 조사와 관련하여 영국 국세청과 협의한 바, 갑 회사는 비교가능거래에 결함이 있음을 인정하고 10~15%로 재조정함.



**가산세 판단 근거**

- 정상가격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 회사는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고자 하였음.

**결 론**

- 가산세 해당없음.

**□ (사례연구) 부주의 또는 태만에 의한 가산세 적용**

- (사례 #2) 정상가격 적용과 관련한 어떠한 시도도 없었음.

**사실관계**

- 영국에 소재하는 갑 회사는 그룹 내 계열사인 특수관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당해 서비스 원가에 5%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출하였음. (계약서 존재)
- 영국 국세청과의 조정을 통해 정상가격범위는 10~15%로 확정되었음.
  - 갑 회사는 5% 수치 적용에 대해 정상가격이라고 주장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가산세 판단 근거**

-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어떠한 합리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음.
  - ⇒ 이전가격세제 관련 부정확한 신고가 부주의 또는 태만에 기인함.

**결 론**

- 가산세 부과대상(Careless or Negligent)

- (사례 #3) 협의된 이전가격정책을 이행하지 않았음.

**사실관계**

- 영국에 소재하는 갑 회사는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무형자산 사용권에 대해 로열티를 지급하고 이전가격세제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함.
- 이전가격세제 조사에 따라 기존에 적용된 이전가격정책의 일부 정정에 동의하였고, 향후 정정된 정책을 적용하기로 협의하였음.
- 이후 조사 시 정정된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정상가격이 산정되지 않은 수많은 거래가 포착되었음.



<b>가산세 판단 근거</b>
○ 갑 회사는 협의된 이전가격정책 미이행 ⇨ 부주의 또는 태만으로 판단
<b>결 론</b>
○ 가산세 부과대상(Careless or Negligent)

- (사례 #4) 중요하고 반복되는 거래에 대해 적절한 정상가격을 고려하지 않음.

<b>사실관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그룹은 그룹 내 각 계열사에게 공동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에 공동서비스센터를 설립하였음.</li> <li>○ 각 계열사의 총매출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서비스요금을 부과하였음.</li> <li>○ 이전가격세제 조사 결과 당해 서비스요금 책정 시 적절한 정상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그룹의 재무담당이사는 이전가격 산출방법 적용에 있어 단순히 사용편이성에 입각하여 정상가격을 산출 및 적용하였음.</li> <li>- 영국 소재 갑 법인의 서비스 받은 정도를 고려해볼 때 훨씬 낮은 수준의 요금으로 재청구 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갑 법인의 비용감소를 초래함.</li> </ul> </li> </ul>
<b>가산세 판단 근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가격보고서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합리성을 상실하였음.</li> <li>○ 중요하고 반복되는 거래에 대해 적절한 정상가격이 고려되지 않은 점은 부주의 또는 태만에 기인한 것으로 달리 볼 수밖에 없음.</li> </ul>
<b>결 론</b>
○ 가산세 부과대상(Careless or Negligent)

□ (사례연구) 의도적인 부정확에 의한 가산세 적용

은폐가 없었을 경우 (deliberate inaccuracies)	은폐가 있었을 경우 (with concealment)
잠재적 수익 또는 손실의 최대 70% 가산세 부과	잠재적 수익 또는 손실의 최대 100% 가산세 부과

○ 의도적인 부정확(Deliberate Inaccuracies)

- 아래와 유사한 사례의 경우 의도적인 부정확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
- 보고서에 명시된 사실관계가 거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거나, 적용된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이 결코 될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있을 때 적용됨.

○ 의도적이고 은폐된 오류(A Deliberate Inaccuracies with Concealment)

- 오류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영국 국세청에 제출하기 전후, 오류를 숨기기 위해 적극적인 행위가 있을 경우를 뜻함.
- 영국 국세청의 ERT (Evasion Referral Team) 에서 다룸.
- 영국 국세청이 은폐로 가정하는 행위
  - 허위 계산서 발행
  - 허위 회의록 작성
  - 계약 또는 계산의 소급발행 또는 사후발행
  - 장부파기

○ (사례 #5) 적용된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이 결코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음.

사실관계

- 갑 법인은 가치 있는 무형자산을 그 자신의 권리로 개발하였음.
  - 타 그룹계열사를 대신하여 무형자산을 개발한 것이 아님.
  - 무형자산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모든 주요 결정은 갑 법인이 행사함.
  - 무형자산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연구 자금 또한 갑 법인이 부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형자산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가 반영된 제품이 판매되었으며, 갑 법인은 제품의 판매로 상당한 이윤을 창출하였음.</li> <li>○ 당해 제품의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원가가산법이 사용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히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반영함에 따라 정상가격원칙을 현저히 위배한 소득이 반영됨.</li> </ul> </li> </ul>
<b>가산세 판단 근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가가산법 적용 시 매우 가치 있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보상만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당해 이전가격은 결코 정상가격이 될 수 없음.</li> </ul>
<b>결 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산세 부과대상(Deliberate Inaccurac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적 은폐가 있었을 경우 Deliberate Inaccuracies with Concealment 적용</li> </ul> </li> </ul>

○ (사례 #6) 보고서의 사실관계가 거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함을 알고 있음.

<b>사실관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갑 법인은 가치 있는 무형자산을 그 자신의 권리로 개발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그룹계열사를 대신하여 무형자산을 개발한 것이 아님.</li> <li>- 무형자산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모든 주요 결정은 갑 법인이 행사함.</li> <li>- 무형자산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연구 자금 또한 갑 법인이 부담함.</li> </ul> </li> <li>○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원가가산법이 반영된 이전가격보고서를 작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한 오류가 포함되었으며, 거래의 실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li> </ul> </li> </ul>
<b>가산세 판단 근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갑 법인의 임원은 이전가격보고서와 같이 회사가 경영되지 않음을 사전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승인하였음.</li> </ul>
<b>결 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산세 부과대상(Deliberate Inaccurac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적 은폐가 있었을 경우 Deliberate Inaccuracies with Concealment 적용</li> </ul> </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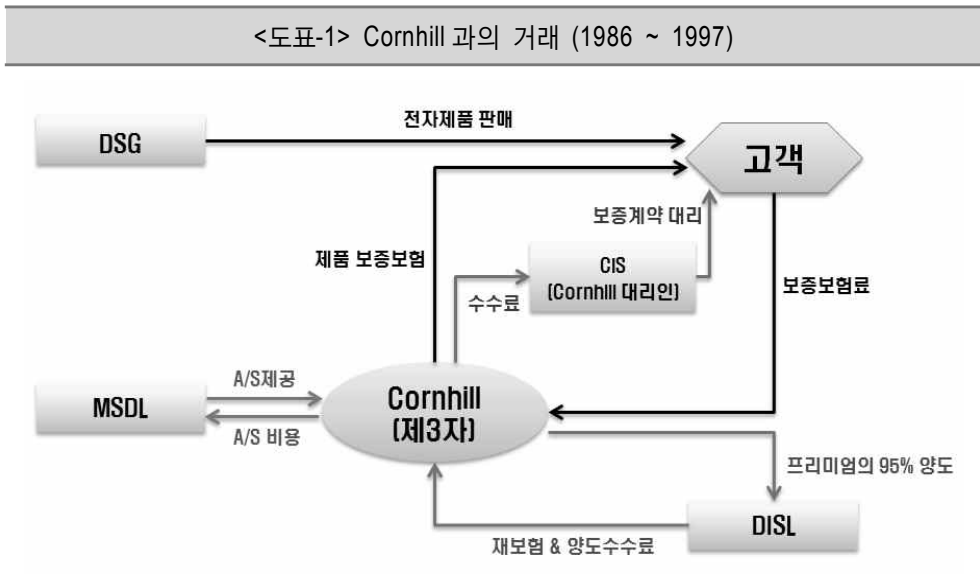
바. 이전가격세제 대표사례 연구 (DSG Retail Limited v HMRC)

□ 개요

- DSG Retail Limited (이하 DSG) v HMRC 사례는 영국 내 이전가격사례 중 세 번째 사례로 법정소송으로 나아간 첫 번째 사례로,
- 2009. 4. 23. 최종 결정되기까지 수년간 법정공방이 있었으며,
-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하나인 이익분할법(Profit Split Method)을 주장하여 승소를 거두었음.
- 당해 사건의 승소로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이 정립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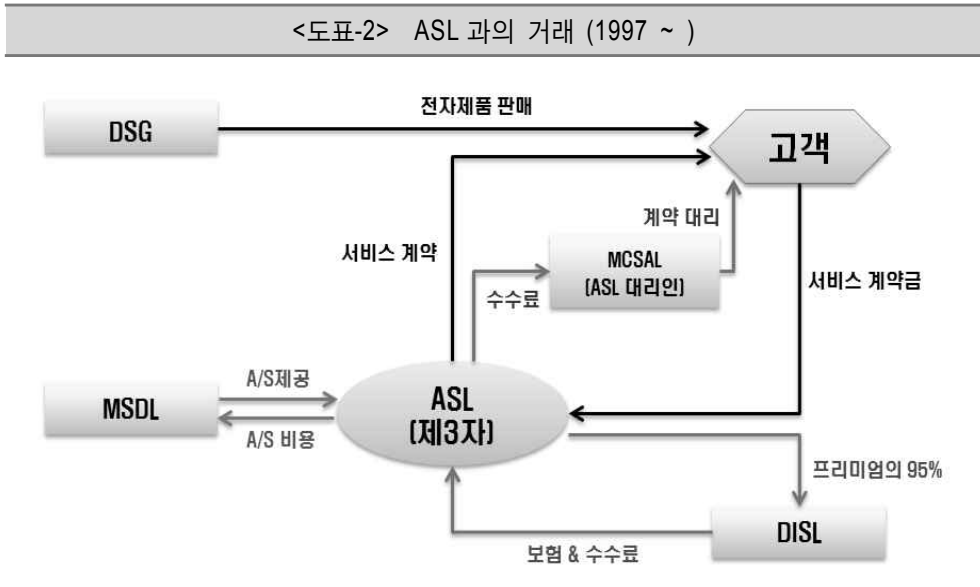
□ DSG Retail Limited 거래 도표

- The Cornhill 기간





○ The ASL 기간



□ 사실관계 및 적용법률

○ DSG 그룹 구성원

- DSG International plc : DSG 그룹의 모회사
- DSG Retail LTD (이하 DSG) : 전자제품 소매기업
- Mastercare Service and Distribution Ltd (이하 MSDL) : 유지보수 기업
- Dixons Insurance Services LTD (이하 DISL) : 보험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Isle of Man (조세피난처)에 소재함.
- Mastercare Coverplan Service Agreements Ltd (이하 MCSAL)

○ 사실관계

<제3자 Cornhill과의 거래(1986 ~ 1997)>

- 텔레비전, 세탁기 또는 컴퓨터와 같은 전자제품 구입 시 고객은 구입 계약에 의해 제조자로부터 12개월의 워런티를 제공받으며, 이와 동시에 DSG는 연장워런티(정액보험)를 고객에게 권장함.

- Cornhill Insurance plc (이하 Cornhill)는 연장워런티 보험을 Coverplan Insurance Services Ltd (이하 CIS)를 통해 고객에게 판매함.
- Cornhill은 워런티와 관련된 위험부담의 5%만을 부담하기 위해 DISL에게 프리미엄의 95%를 지불하고 재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양도에 대한 수수료로 1.5%의 대가를 수수하였음.
- 1993년 상기 거래의 계약관계가 5년 연장되었고, Cornhill은 CIS에게 지급하는 보험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하는데 동의하였으나, DISL로부터 수수하는 보험양도에 대한 수수료는 인상하지 않는데 합의하였음.

#### <제3자 ASL과의 거래 (1998 ~ )>

- 1996년 Insurance Premium Tax (이하 IPT) 인상안에 따라 1997. 4. 1.부터 기존 2.5%의 보험료 세금이 17.5%로 인상되었음.
- 보험료 세금 인상으로 DISL의 프리미엄 수입이 15% 감소되었고, IPT 인상에 따른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의 전자제품 판매에 따른 기존의 워런티 보험계약 대신 서비스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함.
- 이에 따라 1997. 4월 Cornhill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Application Serviceplan Ltd (이하 ASL)와 계약을 맺었으며, ASL은 MCSAL을 통해 고객과 서비스계약을 맺음.
- ASL은 맨섬에 소재한 회사로 서비스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DISL과 위험부담보험 계약을 체결함.

#### ○ 적용법률

- ICTA 1988 Section 770, 773(4), Schedule 28AA

#### □ 주요쟁점

##### ○ DSG와 DISL과의 거래 시 이전가격세제 적용 여부

- DSG는 DISL로 하여금 DSG와 거래관계가 있는 제3자인 Cornhill/ASL과 재보험/서비스계약을 맺게끔 함으로써 사업상 이득을 분여하였음.



- DSG는 DISL과 직접적 계약관계는 없으나 DSG가 제3자인 Cornhill/ASL과 계약을 맺을 때 DISL이 재보험/서비스계약의 일방이 될 수 있게끔 상호합의하였음.
- Section 770 적용 여부
  - 1993년 추가 5년 계약갱신으로 Cornhill의 이익은 감소된 반면, DISL의 이익은 변동이 없었음.
  - Cornhill이 DISL과의 계약에서 불이익을 감수한 것은 Cornhill과 DISL의 계약에 DSG 그룹이 영향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며, DISL이 사업상 영향력을 그룹으로 부여 받은 것은 DISL과 그룹간의 거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이전가격세제 관련 조항인 Section 770이 적용됨.
- DSG와 DISL 간의 실질적 계약(Provision) 여부
  - 영국 국세청은 DSG와 ASL과의 거래 기간에도 DISL이 수익성 높은 보험 계약에 맺을 수 있게끔 함으로써 비정상가격에 의한 거래가 지속되었다고 주장함.
  - DSG와 ASL과의 거래, ASL과 DISL과의 거래 자체로 DSG와 DISL간의 계약(Provision)이 있었다고 간주할 수 없으나, DSG와 ASL 간의 거래가 DSG와 DISL 간의 거래에 미친 영향과 그룹 전체적 관점에서 볼 때 DSG와 DISL 간에 계약(Provision)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DSG와 DISL 간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위배되는지 여부
  - DSG 매장에서 전자제품이 판매되어 연장워런티 추가 판매 또는 서비스 계약이 맺어지는 시점에 DISL이 이익을 부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만약 양자 간 정상가격에 의한 거래가 있었다면, DISL은 DSG에게 재보험 또는 서비스계약 진입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어야 함.
- 재보험 및 서비스계약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 DSG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CUP)을 제시하며 잠재적인 비교가능거래를 그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시장상황, 상품 차이, 거래시기의 차이로 합리적 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됨.



- 적절한 비교가능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이익분할법이 가장 적절하고 이용가능한 산출방법으로 결정되었으며, 잔여이익분석에 따라 DSG에 이익이 할당되었음.

## □ 결론

- 소송은 영국 국세청과 DSG 그룹 적정 이익분할 정도에 대한 합의를 위해 중지되었으며, 2009. 6. 25. DSG 그룹은 성명발표를 통해 소송진과 관련하여 영국 국세청과 비공식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음.

### 사.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

## □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 개요

-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dvanced Pricing Agreements) 정의
  - 기업이 과세당국과의 서면약정을 통해 영국 내 소재하는 회사 해외자 회사 간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근거를 정의하여 조세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
-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 이점
  - 우리나라 기업과 영국 자회사 간의 국제거래 시 영국 과세당국의 이전가격세제 적용에 따른 세무 리스크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음.
    - ※ 영국 국세청에 따르면 이전가격세제 적용과 관련하여 어떤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지 모호한 경우 신청하기를 권하고 있음.
  - 쌍방 APA의 경우 이전가격 승인내용에 따라 보상조정 및 대응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제거할 수 있음.
-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 신청대상
  - 이전가격세제가 적용 거래의 당사자인 모든 영국 내 사업자
  - 고정사업장을 통해 영국 내에서 거래하는 모든 비거주자
  - 고정사업장을 통해 영국 외에서 거래하는 모든 영국 거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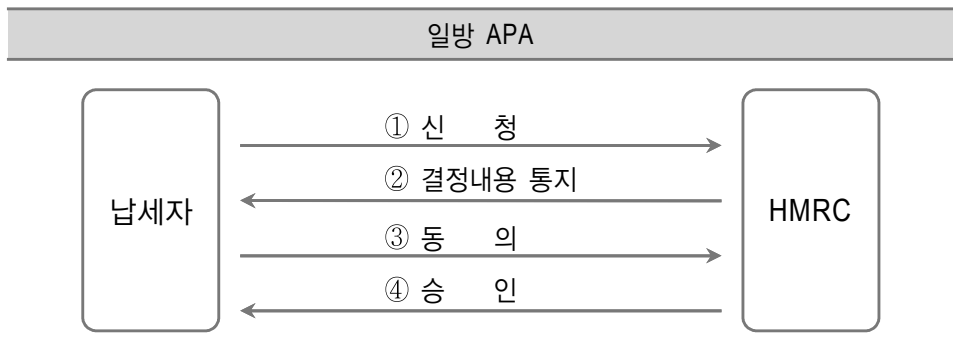


□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 관련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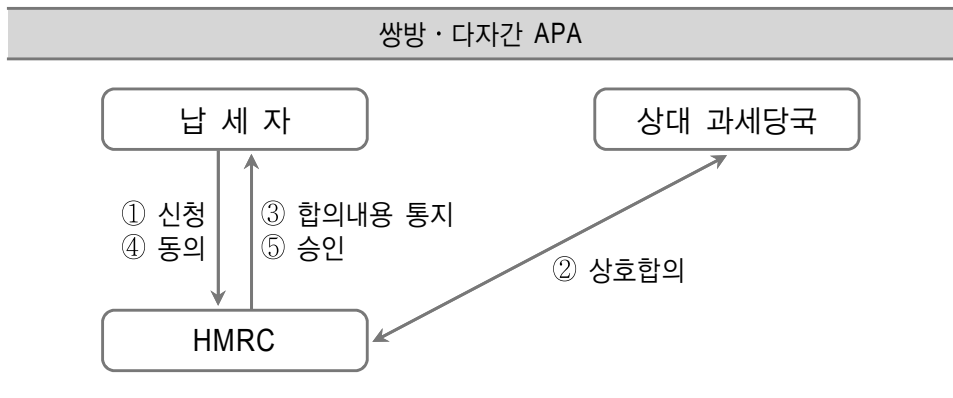
- (도입) Finance Act 1999 Section 85를 통해 1999년부터 APA 제도 도입
- (개정) TIOPA 2010 Part 5 Section 218 ~ 230를 통해 개정
  - 관련 지침서인 Statement of Practice 2를 통해 영국 국세청의 APA 법률 해석 제공

□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 유형

- 일방·쌍방·다자간 APA 모두 신청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영국 국세청은 일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쌍방 또는 다자간 APA를 권장하고 있음.
  - 일방 APA : 영국 국세청과 납세자 간 APA



- 쌍방·다자간 APA : 영국 국세청과 납세자, 상대국 과세당국 간 A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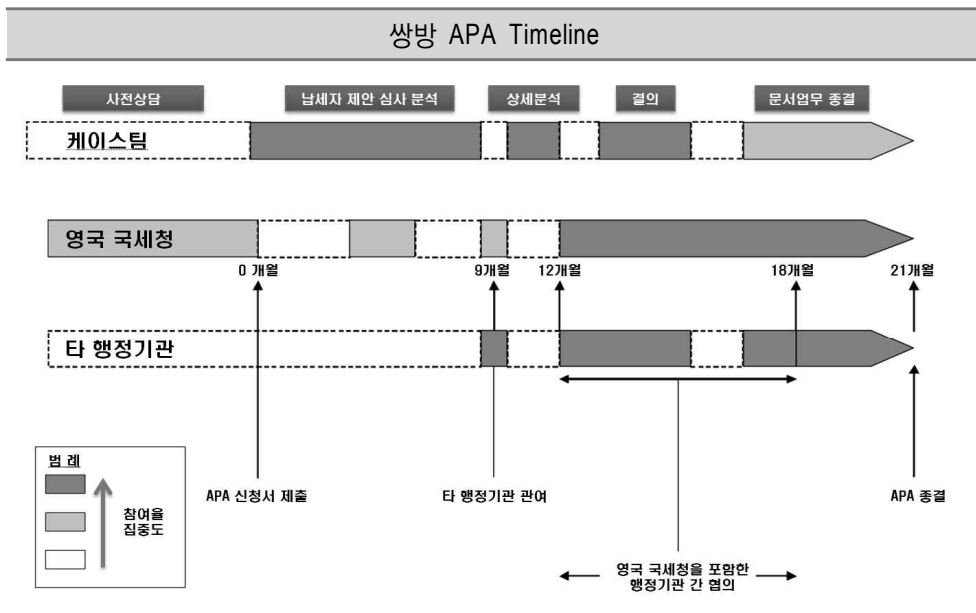


□ 이전가격 사전합의 적용기간 및 소급적용(Roll-Back)

- (적용기간) 이전가격 사전합의 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기간은 3~5년
- (소급적용) 소급적용 가능하며, 적용 가능기간은 APA를 통해 협의가능

□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 진행과정

- 일반적인 쌍방 APA 스케줄(Timeline)



(1) 사전상담

- 사전상담 의의

- 사전상담은 기업이 공식적인 APA 신청 전 APA 제반사항에 대해 영국 국세청 APA 사전상담팀과 비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뜻함.
- 신청자는 APA 소요시간 및 자원 예측이 가능하고, APA의 일반적 진행 과정 및 운영방식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음.
- ※ 영국 국세청에 따르면 사전상담은 의무는 아니지만 비용 및 시간적 측면에서 사전상담을 거치기를 추천함.



- 사전상담 시 일반적인 협의내역
  - APA에 적용되는 이전가격문제
  - 신청자의 세법상 거주지에 대한 세부사항
  - APA에 적용되는 사업의 중요성
  - 정상가격 산출방법 제반사항
- APA 사전상담 담당자

일방적 AP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자 : Andrew Skipsey</li> <li>· 주 소 : 11th Floor East Euston Tower, 286 Euston Road , London NW1 3UH</li> <li>· 전 화 : 03000 586075</li> <li>· 이메일 : Andrew.skipsey@hmrc.gsi.gov.uk</li> </ul>
쌍방 AP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자 : Nick Stevart</li> <li>· 주 소 : 11th Floor East Euston Tower, 286 Euston Road, London NW1 3UH</li> <li>· 전 화 : 03000 585659</li> <li>· 이메일 : Nicholas.stevart@hmrc.gsi.gov.uk</li> </ul>

(2) APA 신청

- APA 신청 제반사항
  - (APA 핵심내용) 이전가격의 정상가격원칙 적용
  - 제출된 신청서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 법률 적용에 있어 영국법령을 만족시키는지 여부가 중요함.
  - 별도의 신청비용 없음.
- (신청방법) 서면으로 관련 양식 제출
  - 정형화된 양식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TIOPA 2010 / S223을 충족해야 함.
  -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 신청자의 사업연혁, 사업내용 등 신청자의 사업 관련 제반사항
- 신청자의 최근 3년 간 회계자료
- APA에 적용되는 이전가격 관련 자료와 기능 및 위험 분석 자료
- APA 신청 시 명시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설명
- APA 적용 기간

### (3) APA 심사

- 영국 국세청은 신청서 및 첨부자료에 근거하여 APA 심사과정을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정보나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쌍방 APA 완료까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평균 18~21개월 소요됨.

### (4) APA 승인에 따른 효과 및 연차보고서 제출

- (효과) APA 승인 후 당해 기업이 APA에 따라 합의된 방법을 준수하여 적절하게 신고하였다면 영국 국세청은 채택된 이전가격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함.
- (연차보고서 제출) 기업은 APA 적용기간 동안 합의된 방법을 적절히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TIOPA 2010/S228이 요구하는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연차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신고서와 같이 제출하며, APA에서 합의한 조건 준수여부를 입증해야 함.



## 2) 우회이익세 (Diverted Profits Tax)

### □ 우회이익세 개요

#### ○ 우회이익세 소개

- Finance Act 2015에 소개되어 2015. 4. 1.부터 적용됨.
- 영국 내에서 발생한 수익을 다른 나라로 이전할 경우 이전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며,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 조작되거나 의도적인 계약 또는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 우회이익세 목적

- 다국적 기업에 의한 지능적 수법의 공격적 탈세전략에 대응하여 징벌적 성격의 세금을 도입하기로 함.
- 우회이익세의 목적은 영국 내에서 발생된 경제적 실질을 온전히 반영하여 과세하는데 있으며, 이는 BEPS 프로젝트의 목적과도 일치함.

### □ 우회이익세 적용 및 면제

#### ○ 우회이익세 적용 대상

- 대기업 또는 다국적기업이 고정사업장 및 이전가격세제 관련 법령적용 회피를 위해 계약 등을 조작하는 경우

#### 우회이익세 과세대상

- ① 영국법인 또는 영국 과세권이 미치는 외국법인이 탈세를 위하여 경제적 실질을 상실한 거래 또는 실체를 이용하는 경우
- ② 외국법인이 영국 내 고정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기 위해 개인으로 하여금 상품·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활동을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영위하게끔 하고, 이러한 행위의 주목적이 영국 과세권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거나 국가 간 조세차이를 이용한 탈세를 위해 고안되었고, 결국 영국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총 세금이 현저히 감소하였을 때

- 우회이익세 과세 면제
  - 중소기업 (SMEs), 관계형대출 계약 등

□ 고객참여(Customer Engagement)

- 의의
  - 우회이익세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경우 영국 국세청과 연계하여 세무적 이슈를 처리하고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음.
- 사전위험평가
  - 우회이익세 지침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어떤 거래가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 기업은 사전에 우회이익세 과세위험이 있는 특정 거래에 대해 영국 국세청과 사전적 검토를 함으로써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음.
- 사전위험평가 진행절차
  - 사업자가 질의한 거래 또는 계약의 우회이익세 해당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 ⇒ 추가 정보를 요청하여 사전위험평가 재진행
  - 사업자가 질의한 거래 또는 계약의 우회이익세 해당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 높은 리스크(High Risk)로 간주되는 경우
    - ⇒ 위험평가 및 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며, 조사 과정 중 당해 거래가 아닌 거래에 대해서도 소득이전에 따른 우회이익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자의 법규준수 비용(Compliance cost)을 최소화함.
- 영국 국세청과의 업무협약 접점

대기업 (Large Business)	중소기업 (Mid-size Business)
(HMRC) LB Task Force 팀 ⇔ (사업자) CRM	(HMRC 홈페이지) MSB Customer Engagement Team과 업무협약 가능



□ 우회이익세 세율 및 부과 프로세스

○ 우회이익세 세율

Case	우회이익세 세율
일반적인 경우	이전금액의 25%
석유부문 관련 Ring-Fencing 이익	이전금액의 55%
은행	이전금액의 25% + (우회이익이 은행수수료와 관련) 추가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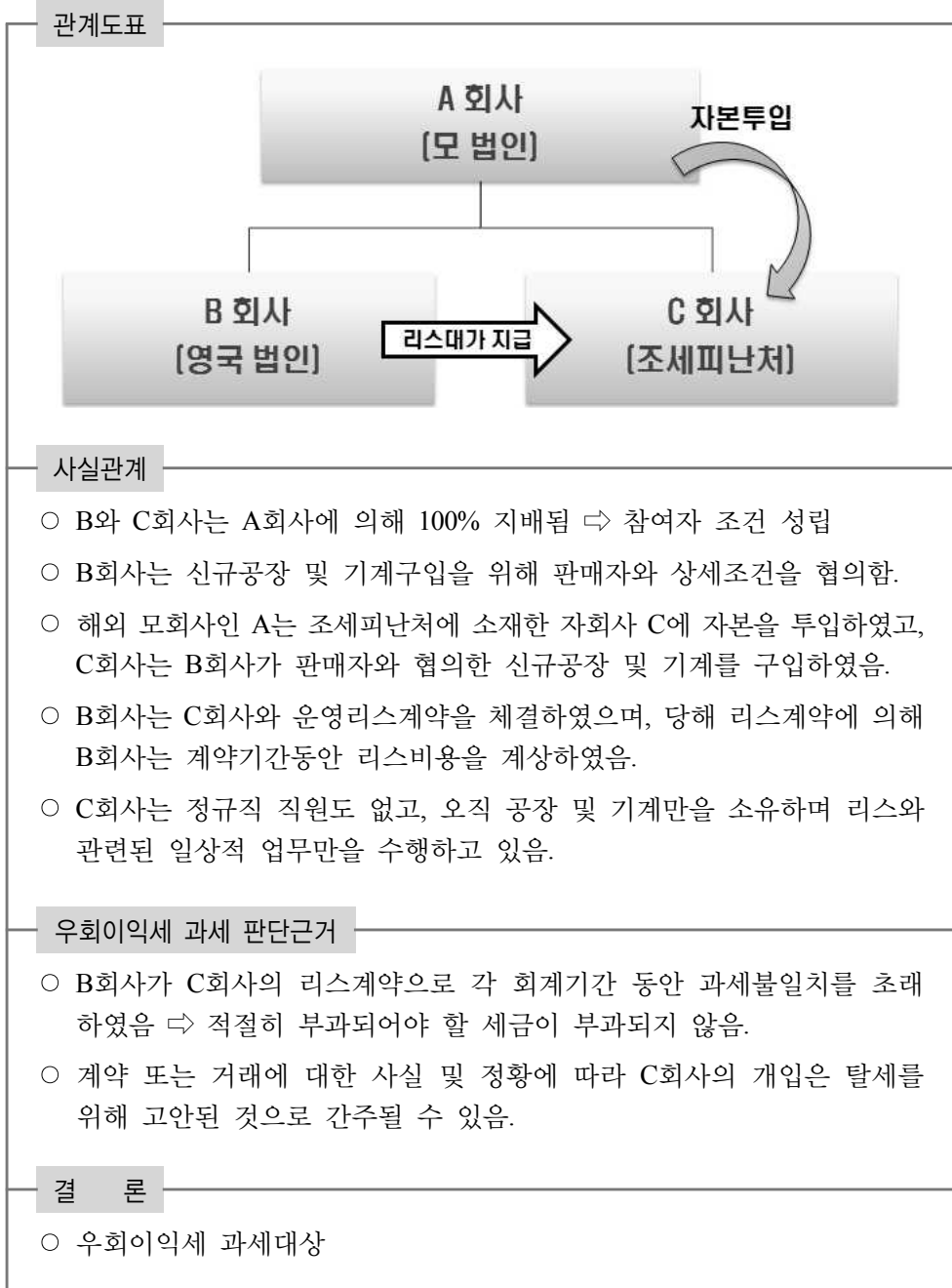
○ 우회이익세 부과 프로세스

우회이익세 부과 프로세스		비 고
잠재적인 우회이익세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우회이익세 과세 면제 아닌 경우)		
↓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영국 국세청 앞 통지의무		미이행 시 의무 불이행 관련 가산세 부과
↓		
영국 국세청은 우회이익세 관련 조사 후 고지서(Charging Notice) 발부가능		
↓		
납부기한	납세자의 불복청구에도 불구하고 30일 내 납부해야 함.	
징수유예	납부기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연장되지 않음.	
연대납세의무	비거주자 미납부 시 그 특수관계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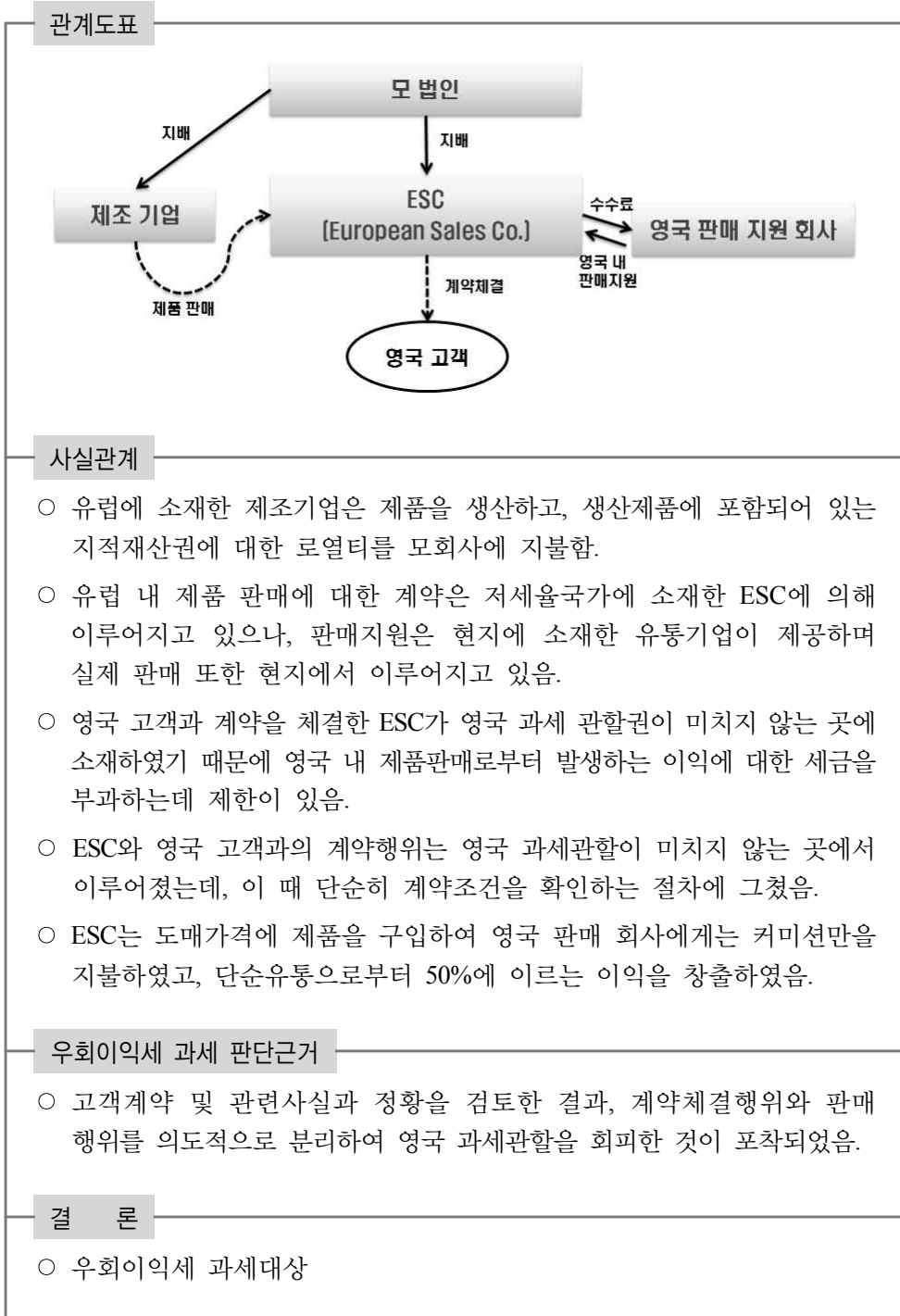
## □ 우회이익세 과세 사례

○ (사례 #1) 경제적 실질을 상실한 거래 또는 실체의 개입





○ (사례 #2) 국제공급망 관계에서 저세율국가에 법인이 소재하는 경우



### 3) 영국의 BEPS 적용

#### □ BEPS 개념 및 추진경과

##### ○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의의

- BEPS란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으로 국가 간 상이한 조세제도나 국제 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를 의미하며,
- 2012. 6. 18. ~ 19.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BEPS 행위를 막기 위한 BEPS 프로젝트 추진 공동성명 발표
- 우회이익세와 BEPS 프로젝트 상관관계

우회이익세	BEPS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이전 등을 막기 위한 영국 내부의 자구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이전 등을 막기 위해 영국 외부의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인 OECD를 통한 결의안 합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inance Act 2015을 통해 기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 도입 또는 다자간협상을 통한 이행 필요</li> </ul>

⇒ BEPS 프로젝트 합의에 따른 법률 도입 또는 개정을 거치고, 다자간 협상을 통해 국가 간 공조를 제고함에 따라 소득이전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세금인 우회이익세 적용 및 부과에 탄력을 받음.

##### ○ BEPS 프로젝트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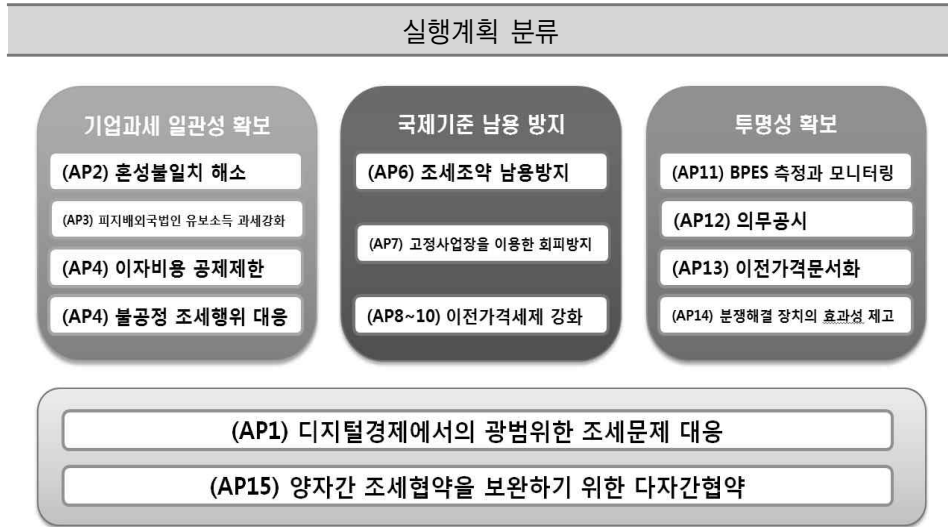
연 도	주 요 내 용
2012. 6월	· G20 정상회담을 통한 BEPS 프로젝트 추진 공동성명 발표
2013. 2월	· Addressing the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보고서 발간 - 실행계획(Action Plan) 제안
2015. 10월	· 15개의 실행계획으로 구성된 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 발표
2015. 11월	· G20 정상회담에서 최종보고서 채택함으로써 최종 확정



□ BEPS 프로젝트 실행계획(Action Plan)

○ 실행계획 분류

- 총 15개의 Action Plan을 3개의 분야로 분류함.



- 과제별 이행강제력 수준

이행수준	정 의
최소기준 (Minimum Standard)	강제 이행의무 부여
기존 규정의 개정 (Revision of Existing Standard)	
공통접근 (Common Approach)	강한 이행 권고 (향후 최소기준으로 발전 가능)
모범관행 (Best Practice)	선택적 도입 가능

○ (Action 1 ~ 10) BEPS 실행계획 및 영국 적용

실행계획 (Action Plan)		이행 강제력 수 준	국내 적용
			(예상) 적용시기
Action 1	디지털경제에서의 조세문제 대응	공통접근	국내법 기적용
			-
Action 2	혼성불일치 해소	공통접근	Finance Bill 2016에 포함
			2017. 1. 1.
Action 3	피지배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모범관행	CFC법 개정을 통해 기적용
			-
Action 4	이자비용 공제제한	공통접근	법 적용을 위한 협의 중 (Open consultation)
			2017. 4. 1.
Action 5	불공정 조세행위 대응	최소기준	2015. 10월 특허박스세제 수정안을 통해 적용
			2016. 7. 1
Action 6	조세조약 남용 방지	최소기준	몇몇 조약에 PPT 조항 및 이중거주자에 대한 승자규정조항 있음
			국가 간 조세조약 및 다자간협정에 따름
Action 7	고정사업장 지위를 이용한 회피 방지	기존규정 개 정	다자간협정에 포함되거나 내국법 개정이 요구됨
			다자간협정에 따름
Action 8 ~ 10	이전가격세제 강화	기존규정 개 정	Finance Bill 2016에 포함
			2017. 1. 1.

↓ BEPS 실행계획 및 영국적용 (계속)



○ (Action 11 ~ 15) BEPS 실행계획 및 영국 적용

실행계획 (Action Plan)		이행 강제력 수 준	국내 적용
			예상 적용시기
Action 11	BEPS 측정 및 통계	모범관행	-
			-
Action 12	의무공시	모범관행	기적용
			-
Action 13	이전가격문서화	공통접근	이전가격 정보요구 관련 법률 완비
			-
	국가별 보고서	최소기준	Finance Act 2015에 포함
			-
Action 14	분쟁해결 장치의 효과성 제고	최소기준	-
			다자간협정에 따름
Action 15	양자간 조세조약을 보완하기 위한 다자간 협정	-	90여개 국가와 다자간협정 진행 중
			-

## 5 기타조세

### □ 국가보험적립금(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개념인 국가보장적립금(NIC)은 영국 조세 수입 중 소득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
- 국가보험번호를 받게 되는 16세가 넘으면 납세의무가 발생

국가보험번호(National Insurance number)	
○ 과세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식별번호의 역할을 하지만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처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정부기관에서만 사용	

### ○ 국가보험 납세의무자

class	납세의무자
class 1	주당 £155 이상 근로소득자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납부
class 1A/1B	고용주가 국가보험금을 부담하여 납부
class 2	자영업자로 연간 £5,965이상 버는 자
class 3	자발적 납부자
class 3A	자발적 납부자 중 2016. 4. 6 연금 수령 나이에 도달한 자로써 납부액을 일시상환하여 연금액을 증가시키려는 자
class 4	자영업자로 연간 £8,060 이상 버는 자

### ○ 사회보장 세율

class	세 율
class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당 £155~£827) 소득의 12%</li> <li>· (주당 £827 이상) 2%</li> </ul>
class 1A/1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의 13.8%</li> </ul>
class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소득 £5,965이상 : 주당 £2.80</li> <li>· 연소득 £5,965미만 : 납부의무 없음 선택가능</li> </ul>
class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당 £14.10</li> </ul>
class 3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 £25 까지 선택적 납부가능</li> </ul>
class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소득 £8,060 ~ £43,000 : 소득의 9%</li> <li>· 연소득 £43,000초과 : 소득의 2%</li> </ul>



- 고용주는 근로자의 사회보장세를 관리하기 위해 국가보험번호 문자 (National Insurance category letter)를 사용

category letter	근로자
A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근로자
B	결혼한 여자
C	연금수령 나이를 넘은 근로자
J	다른 직업에서 납부를 하고 있어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근로자
H	25세 이하 견습생
M	21세 이하 근로자
Z	21세 이하 근로자 중 다른 직업에서 납부를 하고 있어 납부 연기할 수 있는 자

□ 소비세(Excise Duties)

- 유류, 주류, 담배 등에 부과
- 유류세(Motor Fuel Duty) : 석유, 경유, 차량 및 난방에 사용되는 연료에 부과

종류	세액
석유, 경유, 액화연료, 혼합가스	리터당 57.95 pence
LPG	kg당 31.61 pence
차량용 천연가스	kg당 24.70 pence
난방용 중유	리터당 10.70 pence

- 담배세(Tobacco Duty) : 쥬련, 시가, 엽쥬련, 씹는담배 등에 종량세로 부과

제품	세액
쥬련(cigarettes)	권장소비자가격에 16.5% + 20개당 £3.93 부과
시가(cigars)	시가 10g당 £2.45
엽쥬련(hand rolling tobacco)	25g 당 £4.95
씹는담배 등	25g 당 £2.69



○ 주세(Alcohol Duty)

- 맥주, 와인, 증류주, 과일주 등 각종 술에 도수에 따라 부과
- 맥주에 대한 주세

도 수	각 도수 당 세액
1.2%초과 ~ 2.8%이하	8.10 pence
2.8%초과 ~ 7.5%이하	18.37 pence
7.5초과	23.85 pence

- 와인에 대한 주세

와인의 종류	도 수	리터당 세액
일반와인 (still)	1.2%초과 ~ 4%이하	85.60 pence
	4%초과 ~ 5.5%이하	117.72 pence
	5.5%초과 ~ 15%이하	227.84 pence
	15%초과 ~ 22%이하	370.41 pence
스파클링 와인 (Sparkling)	5.5%초과 ~ 8.5%이하	268.99 pence
	8.5%초과 ~ 15%이하	355.87 pence

- 증류주와 도수가 22%가 넘는 와인은 병당 £27.66 × 도수로 계산되어 주세 부과

□ 지방세(Council tax)

○ 영국의 지방세의 변화



- 레이트(rates)의 지방세 세수 부족을 보완하고자 주민부담금을 도입하였으나 반대운동 및 폭동 등 격렬한 반발에 부딪치면 결국 도입 3년 만에 폐지



- 이후 카운슬세가 도입되어 지방세 단일세목으로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

○ 과세대상

- 가치평가국(Value Office Agency)에서 산정한 각 자치단체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의 자산 가치이며, 가구 당 18세 이상 성인 수를 기준으로 부과

○ 카운슬세 산정

단계	방 법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대상의 자산 가치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대방식(banding System)을 이용하여 자산의 가치에 따라 A등급부터 H등급으로 구분</li> <li>- D등급(평균 구간 카운슬세)의 부과액을 산정 후 D등급 구간을 이용하여 나머지 등급의 부과액을 산정</li> </ul> </li> </ul>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당 성인 수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당 18세 이상 성인 2인 이상 거주 시 부과산정액의 100% 부과(전업학생, 정신질환자 등 제외)</li> <li>- 가구당 18세 이상 성인 1인 거주 시 부과산정액의 75% 부과</li> <li>- 장기 비거주 가구는 부과산정액의 0~50% 부과</li> </ul> </li> </ul>



## Ⅲ. 국세행정 및 절차

1. 세금신고 및 납부 / 84
  2. 세무조사 / 84
  3. 조세불복 / 86
  4. 세무대리인 / 90



## 1 세금신고 및 납부

※ 제2장 세무파트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생략함.

## 2 세무조사

### □ 개요

#### ○ 세무조사 의의

- 환급 또는 신고서를 검토하여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납세를 했는지 또는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
- 일정기간 동안 수행하는 세무조사는 유선 또는 문서로 할 수 있음
-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은 경우에 따라 연장 가능함
- 세무조사 중이더라도 환급이나 납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무조사 후 세금 환급이나 납부가 발생할 수 있고, 세금 납부기한은 30일 이내이며 그 후에는 가산금이 추가로 징수됨

### □ 세무조사 연기신청 및 중단심사요청

#### ○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

- 납세자가 질병으로 심하게 아프거나 친지가 사망한 경우
- 제출요구 받은 자료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경우

#### ○ 세무조사 중단심사요청

- 부당한 세무조사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 Independent Tribunal에게 요청하여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조세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세무조사협조와 그에 대한 혜택**

- 협조방법
  - **【Quality of disclosure】** 또는 **【Telling, helping and giving】** 에 따라 부당한 납세에 대해 성실히 협조할 수 있음.
  - COP9에 의해 진행되는 탈세 조사 시 납세자는 Contractual Disclosure Facility에 따라 탈세에 대해 자진신고를 할 수 있음.
    - ※ COP9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행해져야 혜택이 있음.
- (혜택) 가산세·가산금, 패널티 일부 감면 및 명단공개 배제

□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세무전문가, 친구 또는 친지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정 가능

□ **세무조사 종결과 사후처리**

- **【Decision Notices】** 발송 또는 **【Contract settlement】** 로 조사 종결
- 심각한 부정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을 위해 **【Managing Serious Defaulters (CC/FS14)】** 에 따라 범죄수사를 진행하며, **【Publishing details of deliberate defaulters(CC/FS13)】** 에 따라 명단공개도 가능함.
- 국세청의 범죄 조사 정책
  - 세무조사 후 보다 강력한 조치나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 범죄 조사 정책에 따라 사안을 처리함.
    - \*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riminal-investigation/hmrc-criminal-investigation-policy>
  - 2012. 1. 31. 이후 Code of Practice 9에 따라 범죄조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게 되었음.
    - \*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de-of-practice-9-where-hm-revenue-and-customs-suspect-fraud-cop-9-2012>

- 조사결과에 대한 불복은 결과통지수령 후 30일 내에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에 따라 신청함
  - 해당 조사관에게 재검토를 위한 쟁점 관련 신규 자료 제출
  - HMRC 관계자에게 재검토 요청
  - Independent tribunal에 심사 요청
  - 이 외에도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통한 분쟁 조정 가능(단, 법률 해석 및 적용에 대해서는 ADR 신청 불가)
- 세무조사에 대한 기술 또는 운용지침을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HMRC Compliance Handbook을 참조할 수 있음.
  - \*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ompliance-handbook>

### 3 조세불복

#### □ 개요

- 조세불복제도의 의의
  - 국세청의 세금부과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 담당자와 면담 신청 후 상의 가능하며, 조세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음.
  - 사전 면담신청이나 방문약속 없이 일방적인 국세청 방문은 허용하지 않음.
  - 영국 국세청의 과세 결정 또는 경정통지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2009. 4. 1. 부터 변경된 독립심판제도 통해 불복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통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항소하여야 함.
- 항소 가능 예
  -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납세고지서



- 세금감면에 대한 청구
- 사업 관련 기록 및 정보 요청
- 세금 신고 및 납부 지연에 따른 처벌

○ 우리나라와 영국의 조세심판기관 및 불복제도 비교

우리나라	영 국
① 국세청 :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 : 심사청구 ② 조세심판원 : 조세심판	① 국세청 : Appeal to HMRC ② 조세심판원 : Appeal to the Tribunal

□ 불복절차

○ (청구기한) 과세 결정 또는 경정통지 수령 후 30일 이내

○ 불복제기절차

- ① 결정 관련 우편물 수령 후, Appeal Form을 작성하여 국세청에 송부
  - \* (우편물에 반드시 기재할 사항) 소득자의 이름 또는 상호, Tax Reference Number, 불복사항과 그 이유, 납세자가 계산한 납부할 세금
- ②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을 통한 분쟁 조정
  - \* CC/FS21 : ADR에 대한 Factsheet
- ③ 과세 결정 또는 경정통지에 대해 재심의 요청
- ④ Tax Tribunal에 불복 제기
  - \* 재심의 요구결과 통지수령 후 30일 이내에 조세심판을 청구해야 함.
- ⑤ Judicial review 요청

○ 조세 분류에 따른 불복절차

- (직접세) Appeal to HMRC (필수) ⇔ Appeal to the Tribunal
- (간접세) Appeal to HMRC (선택) ⇔ Appeal to the Tribunal



##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 ○ ADR 특징

- ADR은 납세자와 과세담당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중립적인 국세청 내 조직임.
- 법적판결이 필요한 분쟁에 대해 상호협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며, 법적 청구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조세분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담당자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ADR을 진행하며, 회의와 전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함.
- ADR은 주로 사업자의 분쟁해결에 이용되며, 세무조사 관련 검토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 조정 가능 분야(ADR이 유용하게 이용되는 경우)

- 발생한 사실에 대해 납세자와 국세청 간 견해 차이가 있는 경우
-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에 대해 국세청이 동의하지 않고 다른 증빙을 요구할 때
-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무리한 정보를 요구할 때
- 납세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정보를 국세청이 사용하거나 국세청의 가정이 잘못된 경우

### ○ 조정 불가 분야

- 납세기한 연장 또는 유사한 요청
- 명확한 사유에 의해 확정된 제재
- 세액공제
- 범죄수사와 관련된 경우

## □ Appeal to HMRC

- 납세자가 국세청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함.
- 당초 담당자 외의 국세청 담당자가 45일 이내 검토 후 통보함.



- 해당 통보 전 또는 통보기한 전에는 Tax Tribunal에 불복 제기 불가함.
- 해당 통보 후 30일 이내 Tax Tribunal에 불복 제기할 수 있음.

**□ Appeal to the Tribunal**

- (소속) 법무부 산하의 HM Courts and Tribunals Service
- (구성원) 국세청에서 독립된 세무전문가와 배심원
- (심각도에 따른 사건분류 3단계) Basic, Standard, Complex
- (청구기한) 불복검토결과 수령 후 30일 내에 심판 청구
- 결정기한
  - (Basic인 경우) 1개월
  - (Standard 또는 Complex) 2개월
- 진행절차
  - 신청서(T240, T245)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메일로 접수함.
  - Tribunal에서는 신청자에게 해당 건에 대한 준비사항을 통보함.
  - 신청인은 심리를 요청할 수 있음.

**□ 불복청구가 과세집행에 미치는 효력**

- (직접세) 불복으로 징점 세액에 대한 납기연장은 가능하나 가산세 배제 불가
- (간접세) 불복 계류중에는 징점 세액 징수 불가
- (집행부정지원칙) Tax Tribunal의 결정 후에는 반드시 징점세액 납부해야 함

## 4 세무대리인

### □ 개요

-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을 지정하면,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영국 국세청은 관련 서류를 세무대리인에게 통지함
  - 발송 서류 중 납세고지서와 환급통지서는 제외함.

### □ 대리인 가능자

- 공인회계사 또는 조세전문가
- 친구 또는 친지
- 자선 단체 직원
- 조세전문가 선정 관련 정보
  - (웹 사이트) [http : //www.ccab.org.uk/ChoosingAccountantTaxAdviser.php](http://www.ccab.org.uk/ChoosingAccountantTaxAdviser.php)
  - 조세 전문가 단체
    -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in England and Wales
    -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of Scotland
    - Association of Chartered Certified Accountants
    - Chartered Accountants Ireland
    - Chartered Institute of Taxation
    - Association of Accounting Technicians
    - Association of Taxation Technicians

### □ 대리인 지정방법

- 영국 국세청의 Online Authorisation Service 이용하여 세무대리인과 세목 지정



- Form 64-8(Authorising Your Agent) 또는 Form Compl1(Compliance Checks : Temporary Authorisation)을 작성하여 영국 국세청에 우편 제출

□ 온라인상 세무대리인(Trusted Helper)

- 납세자는 친구나 가족을 온라인상 세무대리로 지정할 수 있음
- Trusted Helper 역할
  - 소득세 성실신고 여부 확인
  - 개인세무정보 수정 및 확인
  - 세금환급 신청

□ 중개인(Intermediary) 제도

- 납세자가 질병치료 중이거나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중개인 제도를 이용하며, 중개인은 납세자를 위해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영국 국세청에 질의를 할 수 있음
- 납세자의 Tax Online에는 접근할 수 없음.



## IV. 기 타

1. 참고자료 / 94
2. 부 록 / 95



1

참고자료

□ 연구자료

- 2016 브렉시트 국민투표결과와 시사점, 한국은행
- 브렉시트, 잠재적 위험과 기회, 삼정KPMG
- 주요국의 주택임대소득과세관련비교연구, 노영훈 · 김준현 · 홍성렬
- 영국의 지방세 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 Tolley's UK tax treaties, Munro, Alastair
- The UK corporation tax system, CBI

□ 참고 웹사이트

- 영국 국세청
  -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hm-revenue-customs>
  -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hmrc-manuals>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http://www.kipf.re.kr/>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world.moleg.go.kr/>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 <http://www.kotra.or.kr/>

## 2 부 록

### 1) 브렉시트 (Brexit)

#### □ 브렉시트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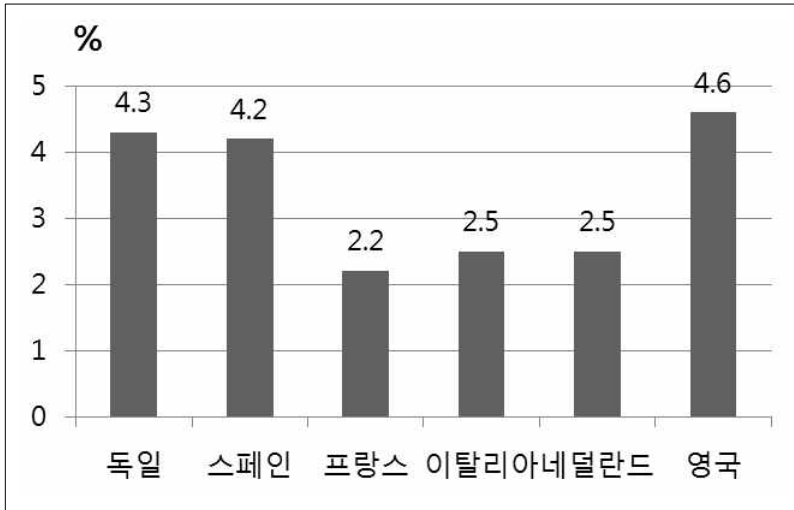
- Britain과 Exit의 합성어로 영국이 EU 탈퇴를 의미하는 신조어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일컫는 그렉시트(Grexit)에서 나온 단어

#### □ 논란의 배경

- 영국은 EU통합과 관련된 조약에 대해 다른 회원국과 달리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아 국민들의 불만이 축적되어 왔음.
  - 1992년 프랑스·아일랜드·덴마크가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에 대하여 국민투표 실시
  - 2005년 프랑스·네덜란드가 EU헌법조약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 유럽통합에 대한 영국 내 여론의 정치적 이용
  - 캐머런 총리는 보수당 내 브렉시트 찬성세력과 영국독립당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총선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2015년 5월 총선에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의석의 과반 이상 획득
- 이민자들에 대한 영국국민의 부정적 인식
  - 동유럽 국가를 포함 13개국이 2004년 이후 EU를 가입하면서 영국 내 EU회원국 이민 증가
  - 영국 내 이민자중 일자리 관련 목적으로 이민을 선택한 인구가 2012년 6월 17.3만 명에서 2015년 9월 29만 명으로 크게 증가



- 영국 국민들은 이들과의 일자리 경쟁, 복지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이민자들의 대한 불만 증가
- 총 인구대비 EU회원국 국적자 비중



○ EU에 대한 분담금 부담과 과도한 규제

- 영국의 EU예산에 대한 순분담금 평균 71억 파운드로 2014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에 이어 4번째를 기록
- 영국의 EU 예산에 대한 분담금 규모

구 분	가 산 세
이론적인 분담금	£163억
리베이트	-£36억
리베이트 반영 분담금(A)	£127
수혜금(B)	-£56
순분담금(A-B)	£71

- Open Europe에 따른 자본시장 · 재생에너지 · 노동시장 · 기후 등에 관한 EU의 과도한 규제로 향후 매년 £333억의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

## ○ EU내 영국의 낮은 위상

- 영국은 1999년 유럽경제통화동맹의 단일통화 사용을 거부 및 2011년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신재정협약 참여를 거부하는 등 EU의 통합강화에 지속적으로 반대함에 따라 EU내 영향력이 점차 축소
- EU의회 내 영국의 의석수 비중이 9.7%로 영국의 상위법인 EU법으로 재정되는 새로운 법안이 영국의 악영향을 끼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움
- 실제 영국이 반대하거나 기권한 법안의 통과비율이 2004 ~ 2009년 2.6%에서 2009 ~ 2015년 12.3%로 크게 증가
- 유럽의회 국가별 의석수

## &lt;유로지역&gt;

국가명	의석수	비중(%)	국가명	의석수	비중(%)
벨 기 에	21	2.8	이 탈 리 아	73	9.7
독 일	96	12.8	키 프 리 스	6	0.8
에스토니아	6	0.8	리투아니아	11	1.5
아 일 랜 드	11	1.5	룩셈부르크	6	0.8
그 리 스	21	2.8	몰 타	6	0.8
스 페 인	54	7.2	오스트리아	18	2.4
네 덜 란 드	26	3.5	포 르 투 갈	21	2.8
프 랑 스	74	9.9	슬로베니아	8	1.1
핀 란 드	13	1.7	슬로바키아	13	1.7
라 트 비 아	8	1.1	유 로 지 역	493	65.5

## &lt;비 유로지역&gt;

국가명	의석수	비중(%)	국가명	의석수	비중(%)
불 가 리 아	17	2.3	헝 가 리	21	2.8
체 코	21	2.8	폴 란 드	51	6.8
덴 마 크	13	1.7	루 마 니 아	32	4.3
크로아티아	11	1.5	스 웨 덴	20	2.7
영 국	73	9.7	비 유로지역	259	34.5

□ 브렉시트 진행 현황

시 기	진 행 내 용
2013.01.23.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2015년 5월 총선의 공약으로 브렉시트 국민투표 시행을 제시
2013.05.07.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당선 및 보수당이 650석 중 331석의 과반이상 의석 획득
2015.11.10	영국은 EU회원국의 지위조정을 위한 4가지 요구조건을 EU 상임 의장에게 공식 전달
2016.02.02.	EU 상임의장이 영국 측 의견을 대폭 반영한 EU측 제안 제시
2016.02.19.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저지를 위한 협상안 타결
2016.02.20.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일 (2016.06.23.) 발표
2016.04.15.	브렉시트 국민투표 공식 선거운동 시작
2016.06.23.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 결과 투표율 72.2%로 탈퇴를 선택한 사람은 1741만명, 잔류를 지지한 사람은 1614만명으로 51.9%로 브렉시트 탈퇴 의견이 승리
2016.07.12~13.	영국의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사퇴, 테레사 메이 신임 총리 취임.
2016.07.14.	EU 잔류파와 탈퇴파를 고루 기용한 통합형 내각 구성
2016.10.02.	테레사 메이 총리 내년 3월 말까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위한 공식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발표
2016.10.17.	지나밀러 등 브렉시트 잔류파들에 의하여 영국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단독으로 유럽연합(EU)탈퇴 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며 소송 제기
2016.11.03.	고등법원은 “정부는 ‘왕실특권(royal prerogative)으로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유럽연합(EU) 탈퇴 의사를 통보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여 영국 정부 판결에 불복하여 즉시 항소
2016.12.05.	대법원에 ‘브렉시트 의회 동의 여부’ 상고심 심리 시작

## □ 투표 전 영국의 요구조건 및 EU정상회의 합의사항

- 영국의 EU회원국의 지위조정을 위한 4가지 요구조건
  - EU 시민권자에 대한 복지혜택의 제한
  - 영국 의회의 자치권 강화
  - 법무·내무 사안과 관련한 영국의 선택적 적용(Opt-out)의 허용
  - 비유로화 국가의 유로존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 보장
- 브렉시트 저지를 위한 EU 정상회의 주요 합의사항
  - EU 28개 회원국 정상들은 영국의 ‘EU의 특별지위’를 인정하며 영국이 요구한 대부분의 조건들을 수용하며 만장일치로 합의

구 분	합 의 내 용
EU 시민권자 복지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시민권자들의 경우 영국 내 취업시 초기 4년 동안 실업수당 청구권한 등 복지혜택제한</li> <li>· 영국 거주 EU시민권자의 자녀가 영국 외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복지혜택을 현행보다 낮은 수준으로 삭감</li> <li>· 테러위협 또는 중범죄 등과 관련된 EU시민권자의 영국 내 유입이 예상될 경우 영국정부가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 부여</li> </ul>
영국 자치권 관 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EU 회원국 의회가 55% 이상의 찬성으로 EU 제정 법률을 전면 거부하거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레드카드(red card)시스템 도입</li> </ul>
재정·금융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가 유로화뿐만 아니라 파운드와 같은 다른 통화도 법적으로 인정</li> <li>· 영국정부의 세수를 유로지역 구제금융 등을 위해 이전하는 것을 금지</li> <li>· EU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의 경우 모든 EU회원국과 반드시 논의</li> </ul>
기업 경쟁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가 영국 기업들의 비즈니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관료주의 문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li> </ul>

## □ 브렉시트 투표 결과

### ○ 국민투표결과

- 전체 투표율 72%, 가결과 부결의 표 차이 1,269,501표로 투표자의 51.9%가 브렉시트를 찬성하여 EU탈퇴 결정
- 연령별로 18-24세의 젊은 세대는 73%가 잔류를 선택한데 반해 65세 이상의 노령층은 불과 40%만이 잔류를 선택
- 전통적인 제조업과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탈퇴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반면에 런던과 주위의 고학력, 고소득, 서비스업 중심지에서는 잔류가 높게 나옴

### ○ 브렉시트가 결정 되자 2016.06.24. 영국과 유럽의 주가는 물론 아시아의 주가가 전체적으로 하락

- (미국) 다우존스 3.39%, 나스닥 4.12%, S&P 500 3.60% 가 하락하여 장을 마감하였으며, 특히 모건스탠리 10%, 시티그룹 9%, 골드만삭스 7%, JP 모건체이스는 6% 급락하는 모습을 보임.
- (유럽) 범유럽지수인 스톡스는 7.03% 하락하여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최대의 하락치를 보였으며, 영국 FTDE 지수도 3.15%, 독일 DAX지수는 6.82%, 프랑스 CAC지수는 8.04%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특히 영국의 금융업종의 주식이 20%까지 하락하는 등 전체적으로 급락하여 장을 마감
- (한국) 코스피 지수는 3.09% 최근 4년동안 최고로 하락하였으며 코스닥 시장 또한 4.76%하락하여 올 들어 두 번째로 사이드카가 발동

### ○ 영국의 탈퇴시기를 두고 EU 정상회의에서 논의 및 각국 정상들 입장표명

- (EU 정상회의) 브렉시트 투표 직후 EU 주요국들은 다른 회원국의 추가적인 EU 이탈을 막기 위해 영국의 즉각적인 리스본 조약 50조 (회원국의 탈퇴)를 발동 할 것을 요구
- 독일 · 프랑스 · 이탈리아 3국은 영국의 리스본조약 50조의 발동 없이는 영국과의 공식 및 비공식적인 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 표명

## □ 새로운 총리 취임 및 내각 구성

- 새 총리 테레사 메이의 취임
  - 브렉시트가 결정 난 6월 24일에 캐머런 총리는 국민들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향후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시기 및 EU와의 탈퇴협상 자체도 새로운 총리가 맡아야 한다며 보수당 전당대회 전인 10월에 총리직을 사퇴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총리 후보자 사임 등으로 인하여 7월초기 사임 후 7월 13일 새로운 총리인 테레사 메이 취임
- 새로운 내각의 구성
  - 총리는 취임이후 내각의 90% 이상을 바꾸고 브렉시트 찬성파와 반대파를 고루 기용하는 통합형 내각을 구성하였으나, EU 탈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 직책에는 보리스 존슨, 데이비드 데이비스, 리암 폭스, 안드레아 레드섬 같은 대표적인 브렉시트 탈퇴파를 중용

## □ 리스본조약 50조의 발동권한에 대한 공방

- 투자회사 대표인 지나 밀러 등 원고는 정부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할 권한이 없다면서 '16.10.17. 소송 제기
- '16.11.03. 존 토머스 잉글랜드·웨일스 수석판사를 재판장으로 하는 고등법원 재판부는 “정부는 의회 사전 승인 없이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
- 메이 영국 총리는 판결에 즉각 불복해 대법원에 제소, '16.12.05. 대법원 상고심 심리가 시작됨. 영국 정계는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브렉시트 자체가 번복될 가능성은 낮지만 판결로 인하여 리스본조약 50조의 발동 일정 자체는 불투명하다고 관측

□ 리스본조약 발동 이후 EU-영국간 무역관계 협상 예상

유 형	특 징
EEA (노르웨이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내 노동, 자본, 재화 및 서비스이동의 자유</li> <li>· EU 예산분담 및 EU 대부분의 기준 준수</li> <li>· EU 부가가치세 적용 지역에서 제외</li> </ul>
EFTA (스위스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와의 개별 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EU 단일시장 접근 정도 결정</li> <li>· EU 예산분담 및 EU 일부기준 준수</li> <li>· EU 부가가치세 적용 지역에서 제외</li> </ul>
Customs Union (터키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와의 관세동맹을 맺는 방식으로, 일부 산업분야에 한해서 EU와의 역내관세 없음</li> <li>· 일부 EU규제의 적용</li> </ul>
WTO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와 개별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방식으로 WTO회원국의 지위를 가짐</li> <li>· EU 예산·규정에서 자유로우나 EU단일시장에 대한 접근 권한이 가장 어려움</li> </ul>

□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 내 산업전망

- (금융) 단일시장 접근 및 영국의 금융 중심지의 지위 유지 여부
  - (긍정적 예측) 브렉시트로 인하여 영국이 EU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일부 상실 한다고 해도 EU체제가 형성되기 전부터 영국은 국제 금융의 중심지였던 만큼 오래 기간에 걸쳐 형성된 금융 인프라, 우수한 금융 감독체계, 낮은 세율 등 금융경쟁력의 다양한 원천을 가지고 있어 브렉시트로 인한 지위 변화 없을 것으로 예측
  - (부정적 예측) 영국이 브렉시트로 인하여 EU회원국에서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단일 면허를 상실한다며, 런던에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유럽 본부들이 일부 EU내부로 이전하면서 런던의 금융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음

- (제조 및 ICT) 관세 및 단일시장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영국에 본사가 있던 업체들이 EU내 회원국으로 이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지만, 영어 사용이라는 언어적 편리함과 영국 정부의 지원이 뒤따르고 있는 만큼 브렉시트로 영국 기업 환경이 악화하지 않을 것이며, 세계적 기업들의 영국투자도 줄어들지 않을 전망
  - (일본 닛산자동차) 닛산은 브렉시트 이후 유보하였던 영국 선덜랜드 공장의 추가투자를 '16.10월 메이총리와 닛산 최고경영자 난주 가를로스의 회담이후 결정. 구체적인 약속과 보장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영국정부가 닛산에 '최후약정서(last-minute written promise)'를 전달하였으며, 영국 정부는 닛산이 받은 것은 다른 업계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고 밝히며 닛산의 결정은 '영국이 기업에 열려있음을 보여 준다'고 강조
  - (구글, 페이스북, 애플)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표 정보기술(IT) 대기업은 잇달아 영국 투자 계획을 발표. 대표적인 거대 IT 기업인 구글, 페이스 북, 애플은 런던에 신사옥을 짓고 직원추가 채용 계획을 발표하여 거대 IT 기업들이 이전 계획이 없는 것이 알려져 영국의 IT허브의 지위를 상실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기타) 영국은 유한회사를 만들 때 자본금 요건이 필요 없는 등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국 정부는 EU와 최대한 긴밀한 관계를 유지 할 수 있는 관세동맹 수준이상의 FTA를 맺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브렉시트의 추이를 살펴보고 진출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 설정 필요



## 2) 한·영조세조약

[1996.12.29]

1996. 10. 25 서울에서 서명

1996. 12. 29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는,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신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 1 조 【인적범위】 [1996.12.29]

이 협약은 일방채약국 또는 양채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된다.

### 제 2 조 【대상조세】 [1996.12.29]

1. 이 협약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각 채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 및 양도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 가. 한국의 경우
    - (1) 소득세
    - (2) 법인세
    - (3) 주민세 및
    - (4) 농어촌 특별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 나. 영국의 경우
    - (1) 소득세
    - (2) 법인세 및
    - (3) 양도소득세
 (이하 “영국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채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 제3 조 【일반적 정의】 [1996.12.29]

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 가. “한국”이라 함은 해상 및 하층토와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
  - 나. “영국”이라 함은 대륙붕에 관한 영국법에 따라 해상 및 하층토와 천연자원에 대하여 영국의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국제법에 따라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영국 영해 밖의 지역을 포함한 영국본토와 북아일랜드를 말한다.
  - 다.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1) 한국에 있어서는, 한국 국적을 소유한 모든 개인과 한국에서 시행중인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조합 및 협회
    - (2) 영국에 있어서는, 영국 시민, 영국내 거주권을 가진 자로서 여타 영연방 국가 또는 영토의 시민권을 소유하지 아니한 영국신민, 그리고 영국에서 시행중인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조합.협회 또는 기타 실체
  - 라.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영국을 말한다.
  - 마. “인”이라 함은 개인.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하나, 조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 야.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가 오로지 타방체약국 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자.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1) 한국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원 장관 또는 그의 권한있는 대리인
    - (2) 영국에 있어서는, 내국세청장들 또는 그들의 권한있는 대리인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제 4 조 【거주자】 [1996.12.29]**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관리장소설립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여타 기준에 따라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또는 양도 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동 개인은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 다. 동 개인이 일상적인 거소를 양 체약국에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이 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그는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의문이 있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26조(상호합의 절차)에 따른다.

**제 5 조 【고정사업장】 [1996.12.29]**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가. 관리장소
  - 나. 지점
  - 다. 사무소
  - 라. 공장
  - 마. 작업장
  - 바. 광산·유전·가스정·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은 그러한 장소·공사 또는 활동이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이 조 전항의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또는 전시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 나. 저장 또는 전시만을 목적으로 하여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 소유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 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수행하기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 바. 이 항 “가”호 내지 “마”호에 언급된 복합적 활동의 수행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단, 그러한 복합적 활동의 수행으로부터 초래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5.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타방채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일방채약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 그 기업은 동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일방채약국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 가. 그가 일방채약국에서 그 기업을 위하여 계약채결권을 가지고 동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다만 동 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이 고정된 사업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함.

나. 그가 그 기업을 위하여 정규적으로 재화 또는 상품을 인도하는 일방체약국에서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경우

6. 기업이 일방체약국에서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여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이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인이 사업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이 되지는 아니한다.

**제 6 조 【부동산소득】 [1996.12.29]**

1. 농업 또는 임업 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규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그리고 광산, 광천,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여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인 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 7 조 【사업이윤】 [1996.12.29]**

1.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그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이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이 조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동 체약국이 그러한 관례적인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되는 배분방법은 그 적용결과가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6. 이 조 전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제8 조 【해운 및 항공운수】 [1996.12.29]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가. 나용선 또는 나용항공기의 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이윤
  - 나. 재화 또는 상품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되는 컨테이너(컨테이너의 수송을 위한 트레일러 및 관련 장비를 포함)의 사용·유지 또는 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이윤. 단, 이러한 임대 또는 사용·보유·임대는 경우에 따라,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동계산·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이윤중 당해 공동경영의 지분에 비례하여 참가자에게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제 9 조 【특수관계기업】 [1996.12.29]

1.
  -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일방체약국에 의해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하여 그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이 동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된 동 타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을 포함하여 과세할 경우, 그렇게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었다면 동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으로 되었을 경우,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이윤에 대하여 자국에서 부과된 세액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상호 협의한다.

제10조 【배당】 [1996.12.29]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의결권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또는 이익분배에 참여하는 비채권인 여타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동일한 과세상 취급을 받는 여타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또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법인의 배당 또는 배분으로 취급되는 어느

기업이 특수 관계기업에게 지급하는 여타의 항목을 포함한다. 이 조항에서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다음의 경우에 타방체약국 기업의 특수관계기업으로 취급된다.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가. 일방 기업이 타방 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또는
  - 나. 동일인이 양기업의 경영·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동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6. 이 조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주식 또는 여타 권리의 창설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동 창설 또는 양도에 관련된 어떤인의 주된 목적이거나 주된 목적중의 하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1조 【이자】 [1996.12.29]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3. 이 협약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거주자가 지급받아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영국 수출신용보증부가 제공, 보증하였거나 또는 인수한 차관 그리고 보증 또는 인수한 여타 채권 또는 신용대부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경우,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이 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그 이자를 타방체약국의 정부, 그 지방자치단체, 동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동 정부나 동 중앙은행 또는 양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소유되는 금융기관이 지급받아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동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5.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정부 증권·채권 또는 회사채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그러한 정부증권·채권·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한다. 이자라 함은 이 협약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분배금으로 취급되는 항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나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안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자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 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9.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조세의 경감은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에서 동 이자에 대한 조세가 면제되고,
  - 나. 그가 채권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 이자의 발생원인이 되는 채권을 매각하거나 또는 매각하기로 계약한 경우
10. 이 조의 규정은, 이자의 지급과 관련된 채권의 창설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동 창설 또는 양도에 관련된 어떤 인의 주된 목적이거나 주된 목적중의 하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 조 제10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의 경감이 부인되는 경우,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일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통보한다.

**제12조 【사용료】 [1996.12.29]**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2퍼센트
  -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또는 신안)·도면·비밀공식(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동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 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7. 이 조의 규정은, 사용료의 지급과 관련된 권리의 창설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동 창설 또는 양도에 관련된 어떤 인의 주된 목적이거나 주된 목적중의 하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 조 제7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의 경감이 부인되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일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통보한다.

**제13조 【양도소득】 [1996.12.29]**

1. 제6조에서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다음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가. 승인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이외의 주식으로서 그 주식의 가치 또는 동 가치의 대부분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하는 것.
  - 나. 그 자산이 주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 또는 “가”호에 언급된 주식으로 구성된 조합 또는 신탁의 지분.
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

부터 발생하는 이득과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 일방채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동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동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채약국에서만 과세한다.
5. 이 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언급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채약국에서만 과세한다.
6. 이 조 제5항의 규정은 타방채약국의 거주자이며 또한 재산의 양도직전 5년중 어느 때에 일방채약국의 거주자였던 개인이 재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양도 소득에 대하여는 자국법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동 일방채약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996.12.29]

1. 일방채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여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그가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타방채약국 안에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채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 거주자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득중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소득에 대하여만 타방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사.치과 의사와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996.12.29]

1. 이 협약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채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임금 및 여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채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채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고용이 타방채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채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채약국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채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년도의 개시 또는 종료로부터 어느 12개월의 기간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채약국에 체재하고,
  - 나. 그 보수가 타방채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 다. 그 보수가 타방채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 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운수상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으로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의 보수】 [1996.12.29]**

일방채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채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서 취득하는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1996.12.29]**

- 1. 이 협약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채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채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인적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동 소득에 대하여는 이 협약 제7조.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채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양 채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특별 문화교류계획에 따라 타방채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채약국에서 면세한다.

**제18조 【연금】 [1996.12.29]**

- 1. 이 협약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일방채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다음에 대하여는 동 일방채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

나. 보험연금

2. “보험연금”이라 함은 금전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적정하고도 충분한 대가에 상응하는 지급의무에 따라 일생동안, 특정한 또는 확정 가능한 기간동안 일정한 횟수에 걸쳐 정기적으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 제19조 【정부용역】 [1996.12.29]

1.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이외의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이 협약 제15조·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급료·임금 기타 유사한 보수와 연금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이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한국수출입은행·한국산업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를 포함하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소유기관이 지급하는 급료·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와 연금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20조 【교사】 [1996.12.29]**

1.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학교·단과대학·학교 또는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비영리기관으로 인정하는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일방체약국을 방문하며, 또한 동 방문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개인이 그러한 목적으로 동 일방체약국을 최초로 방문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의 대가로 받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타방체약국에서 시행중인 법과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교사 또는 연구원의 보수가 동 타방체약국에서 면세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서 그의 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 보수에 상당하는 액수의 공제를 받을 자격을 가지는 경우,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이 조의 규정은 그러한 연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에 의해 수행되고 특정 사인 또는 사인들의 이익을 주 목적으로 하여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동 연구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1조 【학생과 견습생】 [1996.12.29]**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단지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견습생이 자신의 생계유지·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동 일방체약국의 국외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보조금·장학금 및 이 조 제1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와 관련하여,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학생 또는 견습생은 그가 방문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이용될 수 있는 조세와 관련하여 동일한 인적 공제·구제 또는 경감을 받을 자격을 갖는다.

**제22조 【기타소득】 [1996.12.29]**

1. 신탁 또는 유산관리 과정에서 사망자의 자산으로부터 지급되는 소득을 제외하여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이 협약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 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이 협약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인과 기타 인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소득액이 그러한 관계가 없는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소득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4. 이 조의 규정은,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의 창설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동 창설 또는 양도에 관련된 어떤 인의 주된 목적이거나 주된 목적중의 하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 조 제4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의 경감이 부인되는 경우,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일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통보한다.

#### 제23조 【이중과세의 회피】 [1996.12.29]

1.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영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영국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할 영국의 조세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영국 거주자인 법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자본의 최소한 10퍼센트를 직접 지배하는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그의 이윤에 대하여 영국 법인이 납부하는 영국의 조세를 고려한다.
2. 영국밖의 영토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한 영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 허용에 관한 영국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 가. 한국내 원천에서 발생한 이윤·소득 또는 과세이득(배당의 경우, 동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하는 조세는 제외함)에 대하여는,



직접 또는 공제에 의해서든 한국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하는 한국의 조세는 한국 조세의 산출기준이 되는 동일한 이윤·소득 또는 과세이득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영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 나. 한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의결권의 최소한 10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영국의 거주자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그러한 배당은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한국 법인이 납부하는 한국의 조세를 (이 항 “가”호의 규정에 따라 세액 공제가 허용되는 한국의 조세에 추가하여) 고려한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상, 이 협약에 따라 타방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일방채약국의 거주자가 소유하는 이윤·소득 및 양도소득은 동 타방채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4. 이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조 제2항의 목적상 “납부해야 하는 한국의 조세”라 함은 다음 규정에 따라 어느 연도 또는 동 연도의 일정 기간 중에 허용된 조세의 면제 또는 경감이 없었더라면 어느 연도에 한국 세법에 따라 납부했어야 할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가. 도입된 자본·차관 또는 기술이 한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한국에서 새로운 산업적·상업적·과학적 또는 교육적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 한국 외자도입법 제14조·제16조·제24조·제25조 및 제28조(다만, 동 규정이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 개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일반적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로 미미한 부분만이 개정된 경우에 한한다.)
  - 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양 채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합의한 조세의 면제 또는 경감을 허용하기 위하여 향후 제정되는 여타 규정.(다만, 동 규정이 추후에 개정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동 규정의 일반적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로 미미한 부분만이 개정된 경우에 한한다.)
5. 이 조 제4항에 따른 영국의 조세의 경감은 다음의 경우 주어지지 아니한다.
- 가. 제4항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부여된 조세의 면제 또는 경감이 없었더라면 조세가 부과되었을 이윤·소득 또는 과세이득이 2003년 12월 31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또는
  - 나. 당해 기간이 이 협약의 시행 이전 또는 이후에 개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제4항에서 언급된 조세의 면제 또는 경감이 동 원천과 관련하여 최초로 부여된지 10년이상 지난후에 개시되는 어느 기간내에 그러한 소득 및 이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러한 원천으로부터 동 소득 또는 이윤에 대하여

#### 제24조 【경감의 제한】 [1996.12.29]

1.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어느 소득이 일방체약국에서 조세가 경감되고, 어느 인이 타방체약국에서 시행중인 법에 따라 동 소득과 관련하여 동 타방체약국에 송금되거나 수취되는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되고 그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 이 협약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경감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되는 소득부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2. 이 협약 제13조에 따라 이득이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되고 어느 인이 동 체약국에서 시행중인 법에 따라 동 이득과 관련하여 동 체약국에서 수취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되고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3조는 동 체약국에서 과세되는 이득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 제25조 【무차별】 [1996.12.29]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특히 거소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조건과는 다르거나 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조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체약국에서 불리하게 과세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약 제9조 제1항, 제11조 제8항 또는 제10항, 제12조 제6항 또는 제7항, 제22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일방체약국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1인 또는 그 이상의 타방체약국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각 체약국에 대하여 자국의 거주자인 개인에게 부여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경감 또는 감면을 자국내 거주자가 아닌 개인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6. 이 조의 규정은 이 협약의 대상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6조 【상호합의 절차】 [1996.12.29]**

1.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어느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판단하는 경우, 동 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 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이 협약 제25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권한있는 당국은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나 스스로 만족할만한 해결책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 협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할 수 있도록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어려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따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27조 【정보교환】 [1996.12.29]**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당해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 국내법의 제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이 협약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의 산정·징수, 이와 관련된 강제집행.기소 또는 소원의 결정과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행정·사법기관을 포함)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상기 목적을 위하여만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 법정 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또는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하에서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사업상·산업상·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공정책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28조 【외교·상주사절 및 영사관 구성원】 [1996.12.29]**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따른 외교·상주 사절 또는 영사관 구성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9조 【발효】 [1996.12.29]**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된다.
2. 이 협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발효하며, 그 후 즉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가. 한국에 있어서는,
    -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지급되거나 대부되는 금액에 대하여
    - (2)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대하여
  - 나. 영국에 있어서는,
    - (1)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경우, 이 협약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역년의 4월 6일 이후에 개시하는 부과년도에 대하여
    - (2) 법인세의 경우, 이 협약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역년의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년도에 대하여
3. 이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1977년 4월 2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1977년 협약”이라 함)은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하는 날로부터 종료되고 효력을 상실한다.
4. 1977년 협약의 어느 규정이 이 협약에 따라 부여되는 것보다 더 큰 조세의 경감을 부여한 경우, 그러한 규정은 이 협약의 시행 이전에 개시하는 다음 연도에 대하여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 가. 한국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연도, 그리고
  - 나. 영국에 있어서는 당해 부과연도

제30조 【종료】 [1996.12.29]

이 협약은 일방체약국에 의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개시하는 어느 역년 말로부터 최소한 6개월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종료통보를 함으로써 이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이 효력이 상실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후에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 (2)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대하여

나. 영국에 있어서는

- (1)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경우,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연도 4월 6일 이후에 개시하는 부과년도에 대하여
- (2) 법인세의 경우, 종료통보가 행하여진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년도에 대하여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96년 10월 25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영국 정부를 대표하여

해외세정연구 경진대회 연구보고서  
(영국편 2nd edition)

---

국세청

영국 해외세정연구팀  
전화 : 044 - 204 - 2828  
팩스 : 044 - 216 - 6066

원고 작성 및 편집

국세조사관 최 창 우  
국세조사관 송 치 호  
국세조사관 신 수 미

---

\*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044-204-2828)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